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3170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1. [redacted]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9. 2. 27.

판 결 선 고 2019. 2. 27.

주 문

1.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순번 5 내지 10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2 표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기존 과세처분

1) 원고는 2008. 10. 16. 이전에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그 이후부터는 'B'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자이고(원고가 위와 같이 영위하던 사업을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원고의 형 C는 2009.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도와주던 자이다.

2) [redacted]국세청은 2012. 1. 13.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얻은 대부이자수입(이하 '이 사건 사업소득'이라 한다)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2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예금)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redacted]국세청은 원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가 신고를 누락한 소득을 크게 5가지 유형(4가지 유형의 이 사건 사업소득과 예금이자 소득)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유형

의뢰내용각서, 통장 등 대부관련서류 등을 근거로 한 거래처별·대부건별 이 사건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라 한다).

○ 제2유형

대부거래에 사용된 원고 본인 계좌 또는 차명계좌의 입금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이라 한다).

○ 제3유형

원고의 대부거래를 도운 C가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2010년도 대부거래 내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이라 한다).

○ 제4유형

'차용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해준 다음 질권을 설정해놓는 거래방식' 또는 '원고 내지 제3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차용인에게 빌려주는 거래방식'을 통해 얻은 이 사건 사업소득(이하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이라 한다).

○ 제5유형

원고 및 차명인들 계좌의 예금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

3)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2012. 4. 1. 및 2012. 7. 4.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2002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이하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 특히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와 C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신고누락된 이 사건 사업소득이 두 명에게 절반씩 귀속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나.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1) 1심 형사재판

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012.경 '원고가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소득을 조작·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사업소득과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원고를 기소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29, 142(병합), 180(병합), 214(병합), 242(병합), 277(병합), 484(병합)].[1)]

나) 위 법원은 2015. 8. 24.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일부,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일부,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전부,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전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부분, 나머지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 이 사건 이자소득 전부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위 1심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특히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와 C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신고누락된 이 사건 사업소득이 두 명에게 절반씩 귀속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과는 달리, 위 1심 법원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단독사업주로 보고 2009년 내지 2011년까지의 이 사건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을 선

1) 원고는 당시 공갈죄, 강요죄, 협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도 기소되었으나, 이하에서는 당해 사건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고하였다.

2) 항소심과 상고심 형사재판

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무죄 부분 일부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대구고등법원 2015노489), 검사는 위 항소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전부 철회하였다.

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 28.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중 일부에 관하여는 무죄로 인정하였고, 그 밖의 원고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위 항소심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상고심을 거쳐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 따른 최종 과세 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감액처분을 한 바 있다.

2) 원고와 C는 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2. 18.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마찬가지로 2009년 내지 2011년까지의 이 사건 사업소득을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2] ② 관련 형사사건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철회·변경한 부분 중

2)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증액경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일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경정하며,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부분 중 일부에 한해서만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경정하고, ④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선고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전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위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이라 한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①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3] ②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대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선고한 이 사건 이자소득 전부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④ 관련 형사사건에서 판단대상이 되지 않은 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는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을 유지하였다.

3)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경정처분 등을 거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내역은 별지3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한다)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특히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과정에서 산정한 이 사건 제1 내지 4유형 사업소득별, 이 사건 이자소득별 소득 누락액은 별지4 표 기재와 같고, 각 소득별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별지5 내지 9 각 표 기재와 같다.

4) 한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6. 4. 1. 또는 2016. 4. 15.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내역 등에 맞춰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1년

3) 특히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가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도 여전히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 합쳐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10 기재와 같다.

3.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3호 등에 의하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에 맞춰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당연히 취소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상의 소득세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로서 소득세의 납세의무 있는 개인에게만 부과하는 것이지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의 결정이 위법함을 주장

4)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6. 4. 1. 84,109,76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가 2016. 4. 15. 90,220,760원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114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존부[5]

1)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원고의 기본적 주장

(1) 의뢰내용각서는 원고가 아닌 대부중개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내용각서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D 등이 임의로 제출한 의뢰내용각서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내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의뢰내용각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관여한 바가 없는 대부거래에 관한 의뢰내용각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은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바 있는 등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의뢰내용각서와 D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경우,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그 구체적인 사업소득금액 등을 산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이에 맞춰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고 있으므로, 위 가.항의 '이 사건 사업소득 내지 이 사건 이자소득의 존부' 부분은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기준으로 우선 그 당부를 판단하고, 이에 맞춰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 더욱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관련 기본적인 판단기준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주요 내용 등

갑 제2, 5호증, 을가 제10호증의 4, 제64, 65, 9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그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사업소득과 관련한 D 진술의 신빙성

D이 2011. 11.경 원고와 결별하기 전까지 내연관계를 맺고 약 14년간 원고와 함께 생활하여 왔고, 원고를 따라다니며 거의 모든 대부거래행위에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소득 발생에 관한 D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D의 진술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관련 원고의 대부거래방식[6)]

○ 대부중개인이 원고 측에 전화로 의뢰인(의뢰내용)을 소개하면, 원고는 대부원금, 대부기간, 이자금액 등을 대부중개인과 협의한 다음 조건이 맞으면 대부중개인과 의뢰인(차용인)을 사무실로 오라고 하거나 원고가 거래하는 은행의 VIP실에서 만나 거래를 진행한다.

○ 원고는 위와 같이 대부거래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부분 선이자를 받은 다음 의뢰인(차용인) 또는 대부중개인(의뢰인이 오지 않고 대부중개인만 오는 경우도 있다)에게 원고가 불러주는 내용의 의뢰내용각서를 1부만 작성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대부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6) 원고의 대부거래방식에 관하여, 원고를 위해 대부거래중개를 했던 E 역시 아래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을가 제99호증 3,4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 의뢰내용각서에는 대부금액과 거래내용, 의뢰인(차용인) 등은 기재되어 있지만 약정이자율이나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절대 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대부거래가 끝나면 의뢰내용각서를 의뢰인이나 대부중개인에게 교부해 주지 않고 자신이 보관한다.

▣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제출된 주요증거인 위 의뢰내용각서를 대부약정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원고는 대부거래 전에 선이자를 수취하고 의뢰인이나 대부중개인에게 의뢰내용각서를 1부 작성케 한 다음, 별도로 대부약정서를 작성하는 바 없이 대부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대부거래 이후 위 의뢰내용각서를 자신이 보관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의뢰내용각서는 단순히 대부거래를 의뢰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부금액과 대부기간, 이자 등을 협의하여 조건이 맞을 경우 원고와 대부중개인, 의뢰인(차용인)이 대부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의 사무실이나 은행에서 만나 대부거래를 진행하기 직전에 작성되는 것으로 대부약정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의뢰내용각서에 약정이자율이나 이자금액, 대부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자소득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단 의뢰내용각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부거래가 실제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 또한 대부거래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부거래가 중간에 무산되더라도 의뢰내용각서에 기재된 대로 이미 받은 선이자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그 유·무죄 여부의 판단 기준

○ 다만, 위와 같은 의뢰내용각서만으로는 이자수입의 발생 사실만이 추정될 뿐, 구체적인 이자수입 액수에 관한 증명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나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에 비추어 원고의 대부거래 사실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 D의 진술 외에 차용인이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 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의 발생 및 해당 소득에 관한 소득세 포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①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대부거래내역, ②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부거래내역, ③ 관련자들의 진술 중 오히려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대부거래내역 등에 한해서는 해당 대부거래 이자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검사의 법리오해·사실오인 주장 철회 등으로 인하여 위 항소심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으로 인정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11 표[7], 별지12 표[8] 각 기재와 같다. 또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인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전체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5 표 기재와 같다.

(라) 한편 [redacted]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1. 12. 15.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의뢰내용각서 등이 포함된 탈세제보자료를 접수받은 바 있고,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이라 한다)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내용각서, 수표 또는 통장 사본 등을 확보한 바 있다.

D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별지5 표 순번 48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서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정에서 입수된 자료가 아니라 F가 개인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한 대부관련 서류에 휩쓸려서 들어간 것으로서 원고와 관계된 서류는 아니다.'고 증언한 바 있다.

7)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
8)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추가로 무죄로 인정한 부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 기본적 판단기준

(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의 인정사실, D, E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의뢰내용각서가 작성되고 이를 원고가 보관하고 있었다면 일응 해당 대부거래가 성립되었고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나) 다만 의뢰내용각서의 확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자들이 원고와 무관한 의뢰내용각서[9]를 조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 ■■세무서장은 다툼의 대상이 된 대부거래와 관련된 의뢰내용각서가 이 사건 압수수색 결과물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즉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임을 인정할 구체적·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10] 실제 이자 수취 여부 및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수표 또는 통장 사본만으로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이자수입액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서류·수표 또는 통장 사본·D의 진술 외에도 '차용인이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5 표 기재와 같은 '해당 대부거래의 성립 사실'과 '구체적인 사업소득(이자수입) 발생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서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판단기준'과 일응 동일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

9)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내용각서에는 대부자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뢰내용각서 자체만으로는 그 대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10) 다만 해당 의뢰내용각서와 관련하여 원고 측이 입·출금한 거래 내역, 관련자의 진술 등이 있다면 원고가 실행한 대부거래의 의뢰내용각서로 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 대부거래의 사업소득 발생에 관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따르도록 한다.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 부분[11]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유죄 선고 부분[12]

(가) 원고의 주장

별지5 표 순번 44, 46, 70, 85, 92, 96, 104, 122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원고와 원한관계에 있던 D이 별지5 표 순번 85의 대부거래 당사자인 G와 모의하여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고, G가 작성한 허위 고소장 보유 여부에 관한 진술이 모순되는 등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유력한 증거인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별지5 표 순번 85의 대부거래는 원고가 아닌 H, I이 주식회사 J과 G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①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별지5 표 순번 44, 46, 70,

11)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이다. 이하 같다.

12) 원고는 H과의 2007. 6.자 대부거래, K 주식회사와의 2010. 8. 11.자 대부거래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다(2016. 11. 4.자 원고 준비서면 13면). 그러나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 과정에서 위 각 대부거래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2017. 2. 21.자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준비서면 32면, 33면), 별지5 표에도 위 각 대부거래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85, 92, 96, 104, 12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각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확정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이 부분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소송에서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고, 별지5 표 순번 44, 46, 70, 85, 92, 96, 104, 122 대부거래에 관하여 위 판단기준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원고는 'D이 G와 모의하여 원고를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등 D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앞서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고, D의 진술 외에 다른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출한 G의 확인서(갑 제21호증)는 원고의 위 주장과 일견 부합되는 듯도 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L, M, N의 각 증언(을가 제22호증의 3 내지 5), 거래내역(을가 제22호증의 1)과도 배치되는 등 이를 믿기 어렵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 별지5 표 순번 85의 대부거래는 원고가 아닌 H, I이 주식회사 J 및 G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이미 배척한 바 있고, 특히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무죄 선고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1)에서는 'D의 진술, 통장·수표 사본, 의뢰내역각서 등에 의하면 별지11 표 기재와 같은 대부거래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이자수입액을 추정적으로 산정한 D의 진술[13] 외에는 별지11 표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이 발생하였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11 표 기재와 같은 사업소득(이자수입) 발생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을가 제10호증의 4, 을가 제31호증 내지 54호증)에 의하더라도, 별지11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구체적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1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11 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

13) D은 이 사건 세무조사 내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대부금 1억 원당 1일에 최소 2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다(을가 제10호증의 4 등 참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득세 부과 처분'은 그 소득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다만 별지11 표 순번 23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의뢰내용각서(을가 제5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차금[14] 5천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 의뢰내용각서가 원고가 보관 중이던 자료를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볼 증거' 내지 '차용인이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추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추가로 무죄로 인정한 부분

① 별지12 표 순번 1 내지 20 부분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의 이 부분 각 대부거래에 관한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 원고는 2006. 1. 10.부터 2006. 11. 29.까지 대부약정서나 장부 등 대부계약이나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근거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12 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이자로 지급받은 합계 314,000,000원(=16,000,000원×19회＋10,000,000원×1회)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의 판단
>
>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F에 대한 문답서, 이자내역 및 수표 사본[15]의 각 기재가 있으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4) '차금'은 '(선)이자·보증금' 등을 의미하는 사채업계의 속어이다.
15) 위 해당 수표의 사본은 을가 제28호증의 1 내지 20호증으로 제출되었고,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① F는 원심 법정에서 위 문답서 작성 당시 자신이 종전에 도박죄로 처벌받은 것이 원고의 고발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여 원고가 이자를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원고로부터 위 수표 사본을 교부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수표 사본 여백에는 'F에 수표 복사 30억 이자 1,600만 원 받음'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D은 당심 법정에서 위 문구는 자신이 수표를 복사해 줄때마다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당심 법정에서 수표를 복사해 주는 거래의 경우 이자 또는 수수료가 1억 원당 1일 20만 원이고, 대여기간이 2일 이상인 때에는 위·변조를 막기 위하여 수표번호 중 일부를 지운 상태로 교부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각 수표 사본의 경우 수표번호가 지워지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대여기간이 1일인 것으로 보이고(공소장에도 대여일수가 1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수표 사본의 액면금이 30억 원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수수료는 600만 원(30×1일×20만 원)으로 추산되는바, 이는 위 여백 문구에 기재된 금액 1,600만 원과 크게 차이가 난다.

③ 별지12 표 순번 13의 대부거래와 관련된 수표 사본의 여백에는 '2006. 4. 20. 수표 복사 30억→의뢰인에게 보여주고 1,600만 원 이자 받음(F)→O(P동) 실질적인 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은 당심 법정에서 위 문구 중 'O(P동) 실질적인 회장'은 F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회사가 서울 중구 Q에 소재하다가 2008. 6. 15.경 서울 강남구 P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문구는 앞서 본 D의 진술 내용과는 달리 수표 복사 시점이 아닌 사후에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F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대부거래 내역에 맞춰 본인이 이 사건 각 수표에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한 F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실제로 F는 2006.경부터 P동에서 O을 설립·운영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가 위 각 대부거래에 따른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F에 대한 문답서(을가 제27호증 14면)에 의하면 F가 본인이 원고의 대부거래 내역에 맞춰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D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D 본인이 원고의 대부거래 내역에 맞춰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위 2006. 4. 20.자 수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문답서상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F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이 더욱 신빙성 있다.

그 밖에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위 각 대부거래에 따른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12 표 순번 1 내지 20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② 별지12 표 순번 21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해당 대부거래의 구체적인 사업소득(이자수입)액에 관한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더라도, D의 진술 외에 별지12 표 순번 21과 같은 액수의 구체적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볼 객관적·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해당 부분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같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③ 별지12 표 순번 22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R과 F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전주로서 해당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3)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들로 보이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2 표 순번 22와 같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④ 별지12 표 순번 23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S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S의 이자지급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전주로서 해당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3)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들로 보이고,[16]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2 표 순번 23과 같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⑤ 별지12 표 순번 24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차용인 T이 작성한 포기각서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U 역시 관련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인하는 천만 원을 초과하여 5천만 원 상당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을가 제13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4)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로 보이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2 표 순번 24와 같이 5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 스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별지12 표 순번 24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6) 다만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문 28면에 의하면, 을가 제12호증의 2(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출금증, 계산서)는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 당시 채택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전주로서 해당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⑥ 별지12 표 순번 25 부분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은 '차용자인 V가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차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V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차금인 천만 원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인하는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 중 을가 제14호증의 1,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증거들로 보이고, D의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역시 해당 대부거래의 이자수입액을 추정적으로 계산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17] 그 밖에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배척하고 별지12 표 순번 25와 같이 1,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 스스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별지12 표 순번 25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⑦ 별지12 표 순번 26 부분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의 이 부분 대부거래에 관한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7) D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억 원당 1일에 최소 2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을가 제10호증의 4 45면 참고), 이에 따라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가 V에게 60억 원을 1일 동안 대여하고 위 이자율에 따라 1,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2007. 3. 17.경 대부약정서나 장부 등 대부계약이나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근거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로부터 이자로 지급받은 2억 4,000만 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의 판단

○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X와 그의 사촌 형인 Y는 2009. 1.경 W를 인수한 후 대부거래중개인인 Z에게 유상증자대금 60억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Z는 2009. 3. 17.경 원고로부터 48억 원을 차용하고 나머지 12억 원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합계 60억 원을 X, Y에게 조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위 60억 원은 원심 판결문 4~5쪽의 주금가장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X가 수사기관에서 위 60억 원에 대한 선이자로 2억 원을 Z에게 지급하였고, 2009. 4. 20. 위 48억 원에 대한 이자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대부거래로 인하여 2억 원[선이자 1억 6,000만 원(=60억 원에 대한 선이자 2억 원×원고가 대여한 48억 원/60억 원)+48억 원에 대한 이자 4,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W에 60억 원을 대여하여 이자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억 원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위 공소사실에는 원고가 W에 60억 원을 대여하여 이자로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 2억 원에 대한 조세포탈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

㉮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도운 C가 작성한 수첩(을가 제15호증의 2 9면)에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유상증자 대금 60억, 3/18 유상증자 등기 후 10억짜리 6부를 4/21 出金, 50억 다른 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의 판시내용과 달리 원고가 W에 60억 원 전부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위 대여금의 선이자로 2억 원을 수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 그런데 을가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차용인 W 측의 X는 '(W가) 2009. 4. 20. 대부중개인 Z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는데, 이는 차용한 60억 원을 다른 개인회사 계좌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변제하는 이른바 찍기를 하는 과정에서 통장사용료로 지급한 것이지 이자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W가 2009. 4. 20. 통장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4천 만 원이 차용금 이자로서 지급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데다, 원고가 아닌 대부중개인 Z가 4천만 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09. 4. 20. 4천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W에 60억 원 전부를 대여하고 그 선이자로 2억 원 상당의 사업소득(이자수입)만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을가 제15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피고 [redacted]세무서장 주장과 같이 2억 4천만 원[18] 상당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12 표 순번 26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⑧ 별지12 표 순번 27 부분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갑 제5호증의 2)의 이 부분 대부거래에 관한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8)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가 W에 60억 원 전부를 대여하고, 적어도 위 금원의 4%를 이자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2억 4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2010. 2. 23.경 대부약정서나 장부 등 대부계약이나 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근거 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작성하는 경우에도 이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AA로부터 이자로 지급받은 14억 1,000만 원의 소득을 조작, 은폐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에 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

▣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의 판단

원고가 위 대부거래로 12억 6,000만 원의 이자를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의 판단

○ 원고가 AA로부터 이 부분 대부거래의 이자로 현금 2억 원과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음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AB과 AC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벤츠 승용차의 당시 시가는 1억 8,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나아가 원고가 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 14억 1,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AB의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대부거래의 약정이율과 지급한 이자의 액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AB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이자를 현금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자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이자를 지급할 때 D이 있었고, AC도 항시 동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D과 AC은 수사기관에서 AB이 돈이 없다며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A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AD도 원심 법정에서 AA가 대부업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3억 8,000만 원{현금 2억 원＋벤츠 승용차 1억 8,000만 원(원고는 AA에서 원고에게 위 벤츠 승용차를 주면서 기존에 원고가 타고 다니던 구형 벤츠 승용차 1대를 가지고 갔으므로 위 구형 벤츠 승용차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구형 벤츠 승용차는 AA나 AB이 아닌 AC이 가지고 가 운행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소득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처벌하더라도 방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가 AA로부터 대부거래의 이자로 9억 3천만 원의 수표를 받았고, 이를 원고의 지인인 AE에게 맡겨 놓고 수표보관증 내지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과 달리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적어도 9억 3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제출한 현금보관증(을가 제30호증의 2)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9억 3천만 원을 AE에게 맡겨놓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금원이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자로 받은 금원이라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들(을가 제16호증, 제30호증의 1, 2)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인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고 9억 3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억 8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별지12 표 순번 27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자수입)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19)]

(1) 별지5 순번 1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9) 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부분이다. 이하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4,500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4.경 AF에게 5억 원을 대여해줬지만, 현재까지 위 대여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억 4,500만 원만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위 4,500만 원을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회수불능된 위 3억 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위 4,500만 원을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하면서도 회수불능된 위 3억 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을가 제7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AF은 2011. 11. 22. '원고가 2011. 11. 22. 현재 AF에 대하여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날 2억 원을 변제하는 등 3회에 걸쳐 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채권·채무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AF은 2011. 11. 22.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다.

② AF은 2012. 5. 10. '2004.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3차례에 걸쳐 5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4. 7.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4회에 걸쳐 4,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2011. 11. 22. 2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이자지급 사실확인 안내문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였다.

(다) 판단

① AF이 5억 원을 차용한 다음 원고에게 2억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는데, AF이 2004.경 4,500만 원을 지급하고 난 이후 작성된 2011. 11. 22.자 채권·채무관계 확인서에 5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F도 위와 같이 지급한 4,500만 원은 이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이 2004.경 지급한 4,500만 원은 원금이 아닌 이자로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은 필요경비의 산입 대상이 되는 대손금을 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1호), ②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2호), ③ 기타 기획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005두6737 판결 참조).[20]

③ 그런데 원고의 AF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자체가 없다)[21], 결국 원고의 주장대로 위 대여금 채권 중 회수불능된 3억 원을 대손금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인 원고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비로소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를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3억 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④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5 순번 144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해당 대부거래는 AG과 AH이 중개를 하였고, AG은 차용인 AI로부터 이자 3천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중개수수료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을 2,100만 원[22]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500만 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20)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도 위 판례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다.

21) 원고는 오히려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한 법적 소멸이 아닌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2017. 6. 9. 자 6차 변론준비기일 조서 참고). 가사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완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AF은 2011. 11. 22. 채권·채무관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2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기간 내에는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2)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당시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수취한 이자금액 중 30%를 대부중개인의 중개수수료로 책정하였고, 위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2,1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① 채무자가 직접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라고 할 것이어서, 구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이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판결 참조).

②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원고가 대부거래과정에서 차주로부터 수취한 이자는 그 중 일부가 대부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역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대가로서 이자액에 포함되는 점, ㉯ 종합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 이자소득에서의 이자수입과 달리 사업수입(대부업 거래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공제할 필요는 없는 점[23], ㉰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는 그것이 소득세법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따른 필요경비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원고 스스로 이를 과세관청에 소명하여 공제받도록 함이 세원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부중개인을 통해 차용인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에서 대부중개인에게 귀속된 중개수수료를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3) 사업수입에 대해서는 사업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사업수입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인 사업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있고, 기준경비율은 사업별로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한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3) 별지5 순번 150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대부중개인 U의 의뢰인에게 200억 원을 대여한 바가 없고, 원고 및 C 명의로 각 100억 원씩 입금된 각 통장을 보여준 다음 그 대가로 천만 원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을 7,800만 원[24]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천만 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통장 사본, 수표 사본, U,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U 또는 그 의뢰인에게 200억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7,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U은 2011. 2. 22. '2011. 2. 22.부터 같은 해 2. 23. 12:00까지 AJ은행 AK지점에 2명의 명의로 된 입금 금액 2백억 원의 보통 예금 통장을 개설한다. 요구사항은 계좌번호와 명의만 요구한다.'는 취지의 의뢰내용각서를 작성[25]하였다.

② 2011. 2. 22. 원고 및 C 명의의 각 AJ은행 계좌에 각 100억 원이 입금되었고, 위 각 계좌 통장의 발행지점은 AJ은행 AK지점이며, U은 2011. 2. 22. 위 각 통장 사본 하단에 '위 사실을 확인하고 수령하였습니다.'라고 각 기재하였다.

24) 8천만 원에서 U에 대한 중개수수료 2백만 원을 공제한 금액

25) U이 위 의뢰내용각서의 각서인으로서 작성하여 서명하였다는 취지이다. 이하 의뢰내용각서 '작성'의 의미는 동일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③ U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대부중개인으로서 20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대여인 명의로 된 200억 원의 통장을 2011. 2.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개설하는 방식이었다. 본인이 1억 원 당 20만원씩으로 계산하여 8천만 원[26]을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D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대여기간을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한 달 정도로 하여 자금을 대여해주었다. 원고가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원고 측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원고 측의 통장을 복사해주는 경우, 수표를 복사해주는 경우, 상대방 통장에 자금을 입금하여 그 통장을 복사해주고 자금을 빼내는 경우, 상대방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 질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한 달, 두 달 정도 놔두는 경우 등이 있다. 원고는 2009년경 이후에는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 정도를 이자로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27]을 하였다.

⑤ 원고의 대부중개인인 E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상대방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원고 측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원고 측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원고 측의 통장을 복사해주는 경우 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28]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10호증의 4, 제77, 9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측 명의 통장에 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통장을 복사해주는 방식 역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서의 대부거래 방식 중 하나이고, U이 해

26) =200(200억 원을 1억 원으로 나눈 숫자)×20만 원×2일
27) 을가 제10호증의 4 8면, 9면
28) 을가 제99호증 2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이는 원고의 이자 산정 방식에 관한 D의 진술과도 일응 부합하므로,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이자금액이 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U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8,000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5 순번 151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대부중개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대부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취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의뢰내용각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1,800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을가 제27호증[29]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의 작성인이 의뢰인이 아닌 본인인 것으로 볼 때 일을 추진하다 취소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redacted]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보한 의뢰내용각서

29) 12면 참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내용각서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그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5) 별지5 순번 155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AL에게 200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1,800만 원을 수취한 바가 없고, 200억 원 상당의 잔액증명서와 통장만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3)항의 인정사실, 을가 제7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7.경 원고의 배우자 AM 명의로 된 합계 200억 원 상당의 예금잔액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AL에게 준 사실,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원고의 대부거래 방식 중 하나인 사실, 원고의 형인 C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대부거래로 인하여 1,80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1,800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AL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별지5 순번 157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3.경 AN에게 92억 원을 대여하면서 AN 운영 회사의 주식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이고, 현금으로 이자를 받은 바 없으며, 결국 위 회사가 폐업하여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AN 간의 2011. 1. 31.자 대부거래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 역시 해당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바 있으므로, 별지5 순번 157 대부거래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통장 사본, 수표 사본, AO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AN에게 92억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AO이 작성한 2011. 3. 18.자 의뢰내용각서에는 '금 92억 원을 자금주에게 빌려서 즉시 인출해주는 조건임, 본 건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 시 의뢰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을 위하여 여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였으므로 본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절대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AE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② AE은 2011. 3. 18. AO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AO이 같은 날 위 계좌에 92억 원을 입금하였다. 또한 같은 날 위 계좌에서 93억 원이 인출되었다가 다시 92억 원이 입금되었다.

③ 주식회사 AP은행(이하 'AP은행'이라 한다) 서소문지점은 같은 날인 2011. 3. 18. 92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고, AO은 위 수표에 배서하였다.

④ AN는 같은 날인 2011. 3. 18. AP은행 서소문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⑤ AO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C[30]의 대부거래를 중개하는 업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를 하였고, C가 (본인의 중개를 통해) 2011. 3. 18. AN에게 92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75, 8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AN는 AO의 계좌로 이자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AO의 계좌에서 93억 원이 인출되었다가 92억 원만이 다시 입금되었는바, 결국 AO이 인출한 93억 원 중 92억 원은 AN 등 차용인 측에 대여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원고에게 그 이자로 전달하였으며, 차용인 측은 위 의뢰내용각서대로 같은 날 92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주인 원고가 2011. 3. 18. 대부거래중개인 AO을 통하여 AE 내지 AN에게 92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대여하고, 그 이자 1억 원 역시 AO을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AN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AO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별지5 순번 159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 AQ의 소개로 AR에게 30억 원을 보호예수해주고, 추후 그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나, 추후 AR가 무자력자로 밝혀지면서 전혀 이자를 받지 못했다. 따

30) 원고의 형인 C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을 도와주었는데, AO은 C와 만나 대부거래중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AR가 작성한 의뢰내용각서, 보호예수증서,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30억 원을 대여하고,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인 4,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을가 제7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R를 위하여 30억 원 상당의 보호예수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AR로부터 최소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D의 추정적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29면) 외에는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8) 별지5 순번 162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대부중개인인 AS이 재력과시용으로 원고로부터 350억 원 상당의 예금 통장 사본과 수표 사본을 받고, 원고에게 그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D의 추정적 진술에만 근거하여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7천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수표 및 통장 사본,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350억 원을 대여하고,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인 7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을가 제8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AS에게 350억 원 상당의 통장 및 수표 사본을 준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AS에게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AS로부터 최소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D의 추정적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18면) 외에는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 수입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여 7천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500만 원을 초과하여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9) 별지5 순번 167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해당 대부거래는 원고의 자금으로 250억 원의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으면 AT이 이자로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의 대부거래인데, 해당 대부거래가 무산되면서 이자 5천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① AT이 각서인으로서 작성하고, 대부중개인 AU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이하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 250억 원 ○ 약정금 5천만 원 지급 후 수표확인 ○ 은행 입점 후 지점장 우대금리 25억 원을 확인한 다음 (CD) 발행신청서를 작성 ○ 우대금리(25억 원)를 지급받은 후 (CD) 발행을 한다(우대금리 25억 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즉시 돌아간다).

② AP은행은 15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중소기업은행은 1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의 작성일과 같은 날에 각 발행하였다(위 각 자기앞수표를 통틀어 '2011. 4. 27.자 자기앞수표'라 한다).

③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AU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원고의 대부거래를 중개하는 업무를 하였고, 위 의뢰내용각서에 기재된 대부거래로 인해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AT은 이 법정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250억 원의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으면, 원고는 증인 본인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우대금리 10%를 적용받아 25억 원을 이자로 각 지급받는 형태의 대부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증인 본인은 거액의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의 대가로 발행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별도로 대출받으려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8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AT의 일부 증언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64, 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당 대부거래가 실행되었으며 원고가 이자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통상적으로 선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다음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하고 대부거래를 진행해왔는데, AT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의뢰내용각서에는 약정금 5천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해당 대부거래를 중개한 AU 역시 이자 5천만 원의 지급 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또한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위 의뢰내용각서상의 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자기앞수표가 발행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해당 대부거래가 실행되었을 개연성이 더욱 높다.

③ 조사기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고,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와 2011. 4. 27.자 자기앞수표 사본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위 의뢰내용각서와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기관이 확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1]

그런데 만약 해당 대부거래가 실행되지 않았다면 원고가 위 의뢰내용각서와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고려하면, '해당 대부거래가 무산되어 원고에게 이자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AT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와 증인 AT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31) 한편 원고는 '조사기관이 확보한 의뢰내용각서 중에는 원고와 관련이 없는 대부거래여서 원고가 보관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임의로 제출한 의뢰내용각서도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가 작성된 사실과 해당 대부거래를 제안 받은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원고도 별다른 다툼이 없고, D이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의 내용에 맞춰 거액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임의로 작출하여 조사기관에 제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2011. 4. 27.자 의뢰내용각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해 조사기관이 확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0) 별지5 순번 169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가 AV에게 천억 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수취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D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2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AV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와 확인증, AW·AX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대부중개인 AV이 AW·AX을 위해 원고로부터 적어도 백억 원을 차용하였고, AW·AX이 원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AV이 이후 2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대부거래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이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대부금 1억 원당 1일에 최소 2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는 D의 진술에 따라 그 중 2천만 원만을 해당 대부거래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산정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① AV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에는 '1. AY은행 서초동지점에서 표지어음 천억 원을 월 2부, 3회에 걸쳐 발행해주는 조건임. 2. 지점장에게 6개월 이자 120억 원을 의뢰인이 보관시킨다. 3. 그러한 조건이 안 될 경우 지불한 차금에 대한 것은 반환하지 않는다. 4. 2011년 4월 27일, 단 하루(1일)'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AW와 AX이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에는 '1. 2011년 4월 27일 행위된 모든 행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2. 지급된 1억 2천만 원의 돈도 움직인 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3. 서초동지점에서의 표지어음 발행요청액 일천억 원의 지급요청건에 한합니다. 4.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AV은 2011. 4 . 28. '2011년 4월 27일 AY은행 AZ지점에서 CD발행권에 대한 모든 업무가 정상처리 되었고, 또한 2천만 원을 반환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증을 원고의 형 C에게 작성해주었다.

④ D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해당 대부거래는 원고가 대부중개인 AV에게 100억 원을 1일 동안 대여하는 내용의 대부거래이고, 대부금 1억 원당 1일에 최소 20만 원의 이자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적어도 2천만 원(=20만 원×100억 원×1일) 이상의 이자를 AV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32]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10호증의 4, 제7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보관 중이던 위 각 의뢰내용각서가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라고 볼 직접적·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각 의뢰내용각서가 원고가 실행한 대부거래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② AV이 원고의 형 C에게 작성한 2011. 4. 28.자 확인증은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에 관한 확인증일 뿐 해당 대부거래인 표지어음 발행에 관한 확인증은 아닌데다, 위 확인증과 위 각 의뢰내용각서에 기재된 은행 지점도 다르므로, 위 확인증을 근거로 해당 대부거래가 원고가 실행한 대부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D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하여 원고가 AV에게 100억 원을 대여한

32) 을가 제10호증의 4 33면, 34면 참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거래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의뢰내용각서에서의 대여금 액수와도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 D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④ 그 밖에 '차용인나 대부중개인의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각 진술·이자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회신문 등의 추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1) 별지5 순번 170, 171, 183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30억 원을 차용인 BA의 계좌에 10일 간 입금해주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의 별지5 순번 170의 대부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입금한 당일 날 바로 대여금을 인출해버리면서 대부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가사 대부거래가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산정한 이자수입액(5,300만 원)[33]은 다른 대부거래에 관한 추정이자 산정방식(1억 원당 1일에 20만 원)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이다.

② 별지5 순번 171의 대부거래는 원고가 10억 원을 차용인 BA의 계좌에 5일 간 입금해주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의 대부거래이고, 이로 인해 수취한 이자는 2천만 원에 불과하다.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에서의 대부원금 및 이자수입액 등과 비교하면,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별지5 순번 171의 대부거래 이자수입을 과도하게 산정하였다.

③ 별지5 순번 183의 대부거래는 원고가 150억 원을 차용인 BA의 계좌에 10일 간 입금해주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의 대부거래이다. 그런데 해당 계좌에 다수의

33)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별지5 순번 170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BA에게 30억 원을 이틀 간 대여하고, 이자 5,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대부중개수수료 30%를 공제한 금액인 3,710만 원을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산정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BA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BA이 1억 6천만 원을 해당 계좌를 통해 주고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해낸 것에 불과하고, 최종적으로는 위 금액을 BA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실제 1억 6천만 원이 원고에게 이자로 귀속된 바 없다.

④ 또한 BA은 위 해당 각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증비용을 원고로부터 편취당했다고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해당 각 대부거래에 관한 B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①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 관련

㉮ BA이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Y은행 안양비산동지점 일금 30억 원 중 질권설정(전주 앞으로)
○ 2011. 5. 2.부터 같은 달 6.까지 질권 설정한다.
○ 타인의 통장조회나 금융위기 조짐 발생 시 질권자가 기일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 형사적인 방법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을 위하여 여러 전주들에게 이자를 선불하였으므로 본인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절대환불 요청하지 않겠음을 각서합니다.

㉯ 원고의 형인 C는 2011. 5. 2. BA의 AY은행 계좌에 30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 질권이 설정되었다.

㉰ B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0억 원을 1일 차용하였고, 2011. 5. 2. 공증비용 3백만 원, 선입금 3백만 원, 이자 4,700만 원 도합 5,300만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② 별지5 순번 171 대부거래 관련

㉮ BA의 AY은행 계좌에 2011. 5. 3. 1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11. 10억 원이 출금되었다.

㉯ B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0억 원을 10일 간 차용하였고, 2011. 5. 3. 공증비용 3백만 원, 선입금 5백만 원, 이자 3,200만 원 도합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별지5 순번 183 대부거래 관련

㉮ 2011. 6. 2. BA의 AY은행 계좌에 그 전날 출금한 수표 1억 원과 별도의 수표 150억 원 도합 151억 원이 입금되었다.

㉯ 한편 [redacted]국세청이 위 BA의 계좌에 입·출금된 수표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 2011. 6. 2. BA의 위 계좌를 통해 C의 AY은행 계좌에 1억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 B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50억 원을 10일 간 차용하기로 하고 2011. 6. 2. 위 금원을 입금 받았으나 원고가 같은 달 8.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해갔고, 공증비용 천만 원, 이자 1억 6천만 원 도합 1억 7천만 원(2011. 6. 2. 1억 5천만 원, 다음 날 2천만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④ BA의 고소 등

BA은 '원고와 C 등이 해당 각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증비용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BB은 2017. 8. 11. '원고와 C가 BA과 해당 각 대부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되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공증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없다는 참고인 등의 진술을 고려하면, 원고와 C가 BA으로부터 공증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3호증, 을가 제82, 8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의뢰내용각서, BA의 AY은행 계좌 거래 내역, 위 불기소처분서 등에 의하면 해당 각 대부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선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당 각 대부거래로 인해 'BA이 진술한 금액 중 공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BA이 해당 각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각 이자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고, 지급경위 및 자금 마련 방법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과 부합하는 BA과 C 간의 계좌 및 수표 거래내역(2011. 6. 2.자 1억 5천만 원의 이자지급 내역)도 존재한다.

② 원고는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그 대부원금과 대부기간(1일)을 고려하면 이자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의뢰내용각서, BA의 진술 등에 의하면, 대부기간을 5일[34]로 하고 대부일 당일 선이자로 모두 지급받았다가 결국 1일만에 반환받게 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지급받은 선이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위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34) 해당 의뢰내용각서에서 5일 간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별지5 순번 171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대부기간은 5일에 불과하고 수취한 이자금액도 2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A의 계좌 거래 내역과 BA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대부거래의 대부기간은 9일 또는 10일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기간의 약 2배 정도이고, 따라서 BA의 진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금액의 약 2배 가량인 3,700만 원(공증비용 300만 원 제외)을 위 대부거래의 이자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다만 위 불기소처분 내용에서 보듯이 BA이 해당 각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와 C에게 공증비용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공증비용은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별지5 순번 171, 183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BA이 진술한 해당 각 공증비용(300만 원과 천만 원)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BA이 진술한 해당 공증비용은 300만 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부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해당 대부거래로 인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은 5천만 원[3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비록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해당 공증비용을 사업소득(이자수입)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710만 원만을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

35) BA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5,300만 원에서 해당 공증비용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로, 결국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소득(이자수입)인 5천만 원을 초과하여 해당 대부거래의 사업소득액(이자수입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별지5 순번 170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12) 별지5 순번 211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가 BC에게 201억 원을 실제로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주고 이자 5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을 1,0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50만 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원고의 형 C가 해당 대부거래의 대여금액이 201억 원이고, 그 이자는 1,050만 원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해당 대부거래의 대여금액이 20억 1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은 위 1,050만 원의 1/10 금액인 105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정사실

① BD 명의의 AP은행 계좌에 2011. 8. 24.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BC는 2011. 8. 31. 위 계좌 통장 사본에 '본 사본을 재력과시용으로 사용함.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② C는 2012. 4. 30.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1. 8. 31. BC에게 210억 원을 1일 동안 대부하고, 1,050만 원[36]을 이자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확인서에는 원고가 위 대부거래 외에도 3차례 가량 BC에게 자금을 대부하면서 1일 0.05%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BC는 이 법정에서 '별지5 순번 211 대부거래는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받는 형태의 거래이고 실제로 위 돈을 받지는 않았다. 원고 측이 수수료를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현금 50만 원을 탁자에 놓고 갔다. C가 별지5 순번 211 대부거래 외의 나머지 3건의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일 0.05%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각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아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8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BC의 자필 기재가 있는 통장 사본에 입금된 금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C에게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빌려주는 방식의 대부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여금액이 210억 원임을 전제로 그 이자수입을 1,050만 원으로 산정한 부분은 위법하고, 다만 C 확인서에 기재된 BC와의 대부거래에서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억 1천만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빌려주고 1일 0.05%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인 1,005,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증인 BC는 이 법정에서 50만 원을 그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C 수첩에 기재된 이자율과도 상반될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거래에서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

36) 1일 0.05%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B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1,005,000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3) 별지5 순번 216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대부중개인 F도 해당 대부거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가 제27호증[37]의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BE가 작성한 의뢰내용각서에 기재된 BF은 본인의 가명이기는 하나, 해당 의뢰내용각서는 모르는 일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redacted]국세청 내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확보한 의뢰내용각서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내용각서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그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14) 별지5 순번 230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부중개인 BG의 의뢰인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대부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D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

37) 13면 참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존하여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익)을 8천만 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BG의 배서가 있는 수표 사본,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G에게 100억 원을 4일 간 대여하고,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 8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해당 대부거래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BG로부터 최소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D의 추정적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47면) 외에는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이 8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만, 증인 BG는 이 법정에서 '해당 대부거래가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100만 원을 차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1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100만 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5) 별지5 순번 251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해당 대부거래는 원고가 주식회사 BH(이하 'BH'라 한다)에게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빌려주고 이자 60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실제 해당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D의 추정적 진술에만 의존하여 해당 대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거래에 관한 사업소득(이자수익)을 6천만 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미비서류 보완서약서, D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BG에게 100억 원을 3일 간 대여하고,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 6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BH에 100억 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BH로부터 최소 1억 원당 1일에 20만 원으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D의 추정적 진술(을가 제10호증의 4 48면) 외에는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이자수입액이 6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다만, 당시 BH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BI은 이 법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실제 100억 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받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로 인해 600만 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사업소득(이자수입) 600만 원을 초과하여 산정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6) 별지5 순번 256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해당 거래는 원고가 BJ 명의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받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다음 BJ가 운영하는 건설개발사업의 지분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에 불과할 뿐 대부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BJ가 진행하고자 한 건설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한 채 투자원금만을 돌려받았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의뢰내용각서, 통장 사본, BJ 계좌에 관한 질권설정 내역, C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자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BJ가 작성한 최초 의뢰내용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재력 과시용 ○ 2011. 12. 15. 100억 원을 입금하고 2011. 12. 20. 오후 3시까지 AY은행 비산동지점 100억 원 질권설정 조건 ○ 타용도 사용 안 함. ○ 기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 수수료로 기집행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요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② 또한 BJ는 2011. 12. 15. 100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대여자, 대여기간, 이자율 등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BJ가 작성한 2011. 12. 20.자 의뢰내용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동산 재력 과시용 ○ 2011. 12.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 AY은행 비산동지점 2011. 12.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연장한다. ○ 더 이상 요구조건은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 기납부한 수수료는 자금조성 수수료로 기집행하였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요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④ BJ는 2011. 12. 15. AY은행 비산동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였고, 같은 날 10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23. 100억 원이 출금되었다.

⑤ 또한 BJ의 위 계좌에 2011. 12. 15. 질권자를 C로 하여 질권이 설정되었고, C는 2011. 12. 23. AY은행에 위 질권 해제 요청을 하였다.

⑥ C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2011. 12. 14.부터 같은 달 23.까지 BJ에게 100억 원을 대여하였고, 5천만 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89호증의 1, 2, 4,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차용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에서의 전형적인 대부거래 방식 중 하나이고, BJ가 각 작성한 각 의뢰내용각서와 차용증, BJ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질권설정 내역 등에 의하면 투자계약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BJ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하고 질권을 설정 받는 방식의 대부거래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C 스스로 해당 대부거래에 관한 이자수입액이 5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어떠한 이자도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당 대부거래로 인한 사업소득(이자수입)은 5천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건설사업개발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았고, 그 투자이득금의 50%를 투자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에 지장이 생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용이나 수수료를 원고에게 일체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BJ의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7) 별지5 순번 257, 271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 원고가 별지5 순번 257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K(이하 'BK'라 한다)에 150억 원을 대여하고 (선)이자 1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직후 이 사건 세무조사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전주들이 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BK와의 위 대부거래를 해지하고 기지급받은 이자도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바 없다.

㉯ 또한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는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BK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조로 어떠한 이자도 받지 않고 100억 원의 잔고증명만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바 없다.

②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대부중개인 AU, 차용인 측 관계인 BL의 각 진술, 의뢰내용각서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3억 원을 제외한 13억 5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사실, 원고가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수수료 2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이자로 지급받았다가, 약 1개월 뒤에 위 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부계약을 해지하고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6억 원을 BK에 반환함으로써, 결국 3억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얻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①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 관련

㉮ 원고는 2011. 12. 15. BK와 BK 명의의 AY은행 계좌에 150억 원을 입금해 주고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 받은 다음 3개월 간 이를 유지하기로 하는 대부거래 약정을 하였다.

㉯ 위 약정에 따라 2011. 12. 15. BK 명의의 AY은행 계좌(이하 'BK 명의 제1계좌'라 한다)에 150억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의 형인 C는 같은 날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 받았다.

㉰ BK 명의 제1계좌는 2012. 2. 1. 해지되었고, 위와 같이 해지되면서 출금된 150억 원의 수표는 같은 날 BK 명의의 또 다른 AY은행 계좌(이하 'BK 명의 제2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으며, BK 명의 제2계좌 역시 2012. 4. 16. 해지되어 위 150억 원을 포함한 예금 전액이 인출되었다.

한편 BK 명의 제2계좌에 관한 질권설정 내역은 관련자료 폐기 등으로 인해 현재 확인할 수 없다.

㉱ BL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BM은행장인 BN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대부중개인 AU를 통해 해당 대부거래를 주선하게 되었고, 대부중개인 AU에게 150억 원의 11%인 16억 5천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약정한 차용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실제로는 4개월 간 (차용기간이) 유지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해당 대부거래의 대부중개인인 AU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부거래와 관련하여 BK 측으로부터 16억 5천만 원을 이자로 받았고, 그 중 3억 원을 중개수수료로 공제한 뒤 13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한 주요 증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원고의 전주들이 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 이에 원고가 해당 대부거래의 해지 및 원금 150억 원의 반환을 원하게 되었고, 증인 본인이 원고를 위하여 위 해지업무를 진행하였다. ○ 다른 전주들로부터 150억 원을 마련하였고, 이에 BK 명의 제1계좌에 관한 질권을 해지하여 위 계좌에 있던 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고자 하였는데, BK 측에서 위 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를 계속 보유하고 있기를 원하였다. ○ 결국 BK 명의 제1계좌를 해지하면서 출금한 수표를 BK 명의 제2계좌로 입금하였고, 다른 전주들로부터 조성한 15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원고의 이자반환 경위 및 방법과 관련하여) BK에서 위약벌로 대부기간을 한 달 더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가 본인에게 2012. 4. 15.까지로 대부기간을 하려면 (이자)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았고, 본인은 12억 원이라고 대답하였다. 결국 원고로부터 12억 원을 받아 새로운 전주들에게 주었다.

②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 관련

㈎ 원고는 2011. 12. 28. BK와 BK 명의의 AY은행 계좌에 100억 원을 입금해 주고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 받은 다음 3개월 간 이를 유지하기로 하는 대부거래 약정을 하였다.

㈏ 위 약정에 따라 2011. 12. 28. BK 명의의 AY은행 계좌[38](이하 'BK 명의 제3계좌'라 한다)에 100억 원이 입금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좌의 예금채권에 관

38) BK 명의 제1, 2계좌와는 별도의 계좌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한 질권을 설정 받았다.

㈐ BK 명의 제3계좌는 2012. 1. 17. 해지되어 100억 원 전액이 수표로 출금되었다.

㈑ BL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대부중개인 AU에게 100억 원의 11%인 11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약정한 차용기간은 3개월이었으나 원고 측에서 계약을 중도 파기하였으며, 이에 원고로부터 1개월분 (이자)을 제외한 8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해당 대부거래의 대부중개인인 AU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BK 측으로부터 11억 원을 이자로 받았고, 그 중 2억 원을 중개수수료로 공제한 뒤 9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BL가 2012. 2. 초경 100억 원을 조기상환하였으니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에게 확인을 받아 2억 원을 BL에게 돌려주었다. 원고는 BL에게 6억 원을 돌려주었다고 들었으며, 결국 지급된 이자 11억 원 중 8억 원이 반환되어 원고는 1개월분에 대한 이자만 수취한 것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가 제86호증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Y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 회신결과,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3억 5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억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각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유 없다.

① 해당 각 대부거래의 대부중개인 AU, 차용인 측 관계인 BL 모두 '해당 각 대부거래로 인해 원고 측이 지급받은 금원,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의 해지로 인해 원고가 차용인 측에 반환한 금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액수 또한 정확히 특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양자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13억 5천만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3억 원의 사업소득(이자수입)을 각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한편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를 해지하면서 기지급받은 이자를 모두 반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일부 증언 및 I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이 부분 진술은 온전히 믿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AU와 BL 모두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의 해지 사실은 진술하였으나,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의 해지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BL는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의 대부기간이 4개월로 연장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할 뿐이다).

㉯ 증인 I은 'BK에서 위약벌로 별지5 순번 257 대부기간[39]을 1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새로운 전주와 BK 간의) 대부기간을 2012. 4. 15.까지로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이자 12억 원을 원고 측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기지급 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원고와의 대부거래계약이 (2012. 2. 1.경) 해

39) 해당 의뢰내용각서에 의하면 2012. 3. 15.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지되면서 새로운 전주와 BK가 새롭게 대부기간을 3개월로 하여 대부거래계약을 하였지만, 새로운 전주와 BK의 상호 동의하에 2개월 가량 지난 2012. 4. 16.자로 대부거래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기존 대부거래계약에서 정한 대부기간과는 달리 새로운 전주와 BK 간의 대부거래가 2012. 4. 16.자로 종료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자비용을 부담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BK 측에 기지급 받은 이자를 반환하였다.'는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약정한 대부기간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 자금을 대부해주었고, 특히 원고 스스로 I을 통해 새로이 150억 원을 조성해주었기 때문에 BK 측에 별다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대부거래계약이 해지되기 전 기간에 관한 이자까지 원고가 전액 반환해줘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 원고는 이자 12억 원 내지 13억 5천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반환 비용의 조성 방법과 지급 내역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 한편 BK 명의 제1계좌에 설정된 질권이 2012. 2. 1.자로 해지되고, 위 계좌에 들어있던 150억 원이 같은 날 BK 명의 제2계좌로 이전되었으나, BK 명의 제2계좌에 관한 질권설정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와 BK 간의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가 2012. 2. 1.자로 해지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③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 개시일인 2011. 12. 28. 당시에는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의 해지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의 해지일인 2012. 2. 1. 이전에 이미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가 해지되었으므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BK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조로 어떠한 이자도 받지 않고 별지5 순번 271 대부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별지5 순번 257 대부거래 해지를 담당한 I도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도 없다).

2)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AO, Z 및 C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소득(이자수입)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조세포탈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바 있고, 조세심판원 역시 위 형사판결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기간(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에 대한 부과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그 사실판단이 정당하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나)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기간(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에 대한 부과 처분' 역시 C의 진술, 입금액, 다른 유형의 소득과 중복되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주요 내용 등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의 발생 여부 및 그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6조는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 및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다만 장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지조사[40]에 의한 추정계산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계산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redacted]국세청은 탈세제보의 내용과 D, C 등 대부관계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원고가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은닉하였다고 보아 대부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400여 건의 거래를 분석하여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금액 중 1억 원 미만의 금액은 사채이자라고 판단하였던 점, 다만 사채이자로 판단한 500만 원 미만의 입금액 부분은 그 거래건수가 너무 많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점, [redacted]국세청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관련 계좌의 방대한 입출금거래내역(입출금 건수 약 78,600건, 입출금 총액 각 5조 6,000억 원 상당) 중 사업소득

40)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이자수입)으로 추정한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으로 입출금된 거래 약 2,200여 건에 대하여 원고(C 포함)에게 약 2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어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이자수입)과 중복되는 부분과 이자가 아닌 소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600건의 입금액을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특정하였던 점, 원고의 형인 C도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액이 대부분 사업소득(이자수입)임을 인정하였던 점을 알 수 있어,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통장입금액을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보는 추정계산방법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한편 D은 차명통장 입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원금과 사채이자를 입금 받기도 하지만, 위 자금을 다시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아닌 돈이 차명계좌간 대체입출금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차명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중에는 다른 유형(이 사건 제1, 3, 4유형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어 그 전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25회 공판조서 참조).

○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비록 [redacted]국세청이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600건의 입금액을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특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는 추정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사업소득(이자수입)이 아닌 입금액이나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이자수입)과 중복될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추정계산의 합리성을 배제할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장입금액 전부를 원고가 은닉한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입금액이 입금명의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사업소득(이자수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2) 위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대부중개인 AO·Z와 원고의 형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해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 및 해당 소득세 포탈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원고는 이 부분 유죄 판단에 대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C는 원고의 직원이기는 하나 원고의 형으로서 대출과 담보설정 등 중요한 업무를 하며 위 대부업에 관여하였던 관계로 원고의 이자 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C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에 앞서 미리 세무사의 상담을 받기도 하였던 점, AO도 국세청의 소환을 받고 구속된 상태에 있는 AE을 접견한 후 조사에 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O, Z, C의 수사기관에서의 관련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배척하였다.

(4)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이 부분 무죄 판단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중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부분은 모두 취소되었다.

(5)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이 된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은 별지6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 부분[41]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단순 입금내역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대부중개인 AO·Z와 원고의 형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해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 및 해당 소득세 포탈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4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이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이 문제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판시한 바와 같이 AO·Z·C의 수사기관에서의 관련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그 밖에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1) 관련법리

(가)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가 제62, 90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별지6 표 기재와 같이 '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redacted]국세청은 별지6 표 기재 제3자 명의 차명계좌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액만을 별도로 정리하였는데,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제3자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여 대부이자를 수취·관리하였던 점,[42] ② D이 이 법정에서 1억 원 미만의 대부이자는 대부분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업에서의 통상적인 대부원금 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범위 내의 입금액은 대부원금의 변제액이 아닌 대부이자 수취액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C도 수사기관에서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액이 대부분 이자소득임을 인정하였던 점, ④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차명계좌와 원고 명의 계좌 중 생활비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입금액수, 별지6 표의 거래내용(입금의뢰인) 란 기재 등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의 거래 내역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42) 위 나)항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판시 내용과 아래 '5)의 나) (3)항'에 의하면, 원고가 해당 차명계좌로 대부이자를 직접 받거나 현금으로 수취한 이자를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차명계좌와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금액은 이 사건 사업의 대부이자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나)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대부원금과 대부이자를 자금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이 아닌 돈이 차명계좌 간 대체입출금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차명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에는 다른 유형(이 사건 제1, 3, 4유형 사업소득)으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입금명의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이자수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원고의 사업소득(이자수입)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redacted]국세청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간에 같은 날이나 그 무렵 동일한 액수의 금액이 입·출금된 경우에는 해당 입금 내역은 자금세탁 목적의 거래로 보아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차명계좌에 입금된 날이나 그 무렵 다른 유형의 사업소득(이 사건 제1, 3, 4유형 사업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액(이자수입액)을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액(이자수입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사업소득액을 중복으로 산정할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의 판시 이유와 달리 '차명계좌 간의 입출금액' 내지 '이 사건 제1, 3, 4유형 사업소득액'이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액으로 잘못 산입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리한 별지6 표 기재의 '2002년 내지 2005년, 2011년 귀속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은 입금명의자 등의 진술 유무와 상관 없이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일응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반면 원고는 이러한 추정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3)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원고의 주장

C가 작성한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은 대부거래 제안을 기재해놓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주요 내용 등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① C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수첩에 대하여 영업활동을 기록해놓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거래사실 일부를 인정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수는 대부관련서류와도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③ 원고의 대부중개인 BO, E, U, AO도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대부거래는 실제로 실행된 것이고, 일부 무산된 거래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원고가 선이자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대부거래를 진행하다가 무산된 부분은 C가 이 사건 수첩에는 '캔슬', '불발'이라고 기재해놓은 점, ⑤ 이 사건 수첩이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고의 차명계좌로 개설한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별지7 표 기재의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원고는 이 부분 유죄 판단에 대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은 ① C가 만약 이 사건 수첩에 상담만 받고 실제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내용까지 적어두었다면 거래의 성사 여부에 대한 구별이 곤란하여 원금의 회수 등 대부업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G은 원심 법정에서 C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대부거래중개인들로부터 문의전화를 받는다고 진술하였는바, C가 거래에 앞서 상담한 모든 내용을 위 수첩에 기재하였다면 그 분량이 압수된 수첩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거래내역은 위 수첩에 적힌 내역 중에서도 특히 대부거래 일자와 채무자, 원금과 이자 등이 특정 가능하고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은 거래만을 선별한 것으로서 적어도 위 거래내역은 성사되어 그로 인한 이자가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배척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별지7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 및 해당 소득세 포탈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명확하게 다투어지지 않은 부분이므로,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관련 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사판결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2011년 귀속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별지8 표 일부)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주요 내용 등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 및 해당 소득세 포탈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고(특히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에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별지8 표 중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도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이 사건 이자소득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원고가 별지9 표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므로, '2002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주장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입증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자소득 발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하였고, 위 차명계좌 및 원고 계좌에서 예금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국세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한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위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의 예금이자소득 내역을 확인·정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가)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3자 계좌로 입금된[43] 이 사건 이자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구체적으로 해당 공소사실 기재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연도별 이자의 산출근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계산 및 증명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위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합계액에 관한 증거가 없고(직권 계산도 불가능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예금이자는 원고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나) 검사는 이 부분 무죄 판단에 대하여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함으로써 이 부분 무죄 판단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세심판원 결정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이 된 이 사건 이자소득은 별

43)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원고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자소득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제3자 명의 계좌 뿐 아니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이자소득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별지9 표 참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표10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 계좌와 제3자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소득의 확인·산정 경위

(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 명세를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전산파일 형태로 관할 세무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다.

(나) [redacted]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별지9 표 기재의 제3자 명의 계좌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차명계좌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예금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원고 계좌와 제3자 명의 계좌에 지급된 예금이자소득 내역을 정리하였다. 한편 2011년 귀속 예금이자소득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예금이자소득 지급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redacted]국세청은 각 금융기관에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이자소득 내역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위와 같이 확인한 별지9 표의 예금이자소득을 원고의 소득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

(3) 제3자 명의 계좌 관련 부분

(가) 관련자 진술

① C는 2012. 3. 26.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BP·BQ·BR·BS·AC·BD·AM·BT·BU 명의의 계좌를 원고(C 포함)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바 있지만, D·BV·BW·BX·BY·BZ 명의의 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한 바 없다. C 본인 계좌에도 이 사건 사업에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의 대부거래 이자수입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C는 2012. 2. 24.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BD·D·AM·BR·BU·BT·BX·CA·BS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③ D은 이 법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D 본인·BD·AM·BQ·BR·BU·BT·BX·BS·BZ·BW·CA·BV·C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현금으로 수취한 대부이자를 위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으며, 계좌로 이자를 받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나) 제3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

별지9 표 기재 2011년도 제3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가 제94호증의 1 내지 50 참고)을 살펴보면, 위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돈이 여러 차례 입출금되었고, 예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면 소액이 입금된 내역은 드물며, 그 밖에 몇 건의 소액 출금 내역만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가 제10호증의 4, 제20호증의 1, 제62, 66 내지 72, 93, 9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라) 판단

살피건대, 별지9 표에 기재된 제3자 명의 계좌는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사용한 차명계좌인 사실에 위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액수, 앞서 2)의 다)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해당 계좌의 예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변제 받은 대부이자 내지 대부원금인 사실이 일응 추정되고, 반면 원고는 이러한 추정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또한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연도별 이자의 산출근거와 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의 계산 및 증명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러한 증명자료(을가 제66 내지 72호증)도 제출되었다].

따라서 별지9 표 기재 원고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 예금액은 원고의 자금으로 일응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예금이자는 이 사건 사업주인 원고의 (예금)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나.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 2005년 귀속 소득에 관하여 이미 두 차례나 선행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2004년, 2005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가) 선행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위 등

(1) 1차 선행 세무조사

(가) [redacted]국세청은 2009. 5. 14.부터 2009. 6. 24.까지 원고에 대해, 원고가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8. 10. 16. 사업자등록)임에도 은행예금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대부업 관련 사채이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혐의로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나) [redacted]국세청은 2009. 5. 14. 사업장소재지로 출장하여 원고의 내연녀인 D에게 금전대부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관련자료가 파기 또는 은닉될 경우 조사진행이 현저히 방해될 것으로 판단하여 범칙조사로 전환 후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급받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위 국세청의 조사 결과 원고는 건설업체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조건으로 이자를 수수하고, 주식담보 및 화폐교환대가로 이자를 수수하는 등 합계 197,690,000원의 이자를 수수하였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2) 2차 선행 세무조사

[redacted]국세청은 2010. 9. 1.부터 2010. 10. 30.까지 원고의 형인 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동구 CC 소재 CD과 CE 사업장을 실제 운영함에도 사업소득 524,862,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사채이자 417,5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적발하였다(위 세무조사를 이하 '이 사건 2차 선행 세무조사'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3) 이 사건 세무조사

(가) [redacted]국세청은 2012. 1. 13.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2012. 3. 30. 원고에 대한 조사를 부분 종결하였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대부업 사업소득 누락, 이자소득 누락에 대하여 2006년 내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건(4,645,000,000원)의 국세를 확정하여 1차로 2012. 4. 1. 결정·고지하였다.

(나) 그 후 [redacted]국세청은 2012. 6. 27. 최종적으로 조사종결하였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대부업 사업소득 및 이자소득 누락에 대하여 2002년 내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건(8,679,000,000원)의 국세를 확정하여 2차로 2012. 7. 4. 경정·고지하였다.

(4) 이 사건 세무조사 경위

(가) [redacted]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1. 12. 15.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하기 이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을 하면서 기업의 유상증자 자금을 '찍기 방식'으로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적인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내용과 원고의 재산상태, 사무실 운영 현황과 대부관련 서류 보관 장소, 소득 은닉 형태나 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탈세제보를 접수받았다.

(나) 그 후 [redacted]국세청은 2012.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면서 488쪽 분량의 탈세제보자료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는데, 위 탈세제보자료에는 원고가 대부거래에 이용한 의뢰내용각서, 확약서, 각서, 차용금 증서 등 대부관련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등

(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은 위 가)항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의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 이 사건 1차 선행 세무조사의 내용은 원고의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의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 중 이와 동일한 과세기간(2004년부터 2007년까지)에 관한 부분은 형식적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반면 이 사건 2차 선행 세무조사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형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CC 소재 CD, CE에 대한 사업소득 탈루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그 조사대상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위와 같은 세무조사가 종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적인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 여기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탈세제보 그 자체로는 부족하고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할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할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등 참조), '조세의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란 세무조사 전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우를 보면, ① 세무조사 전인 2011. 12. 15.경 [redacted]국세청에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었고, ② 그 제보내용은 원고의 사채업 거래 형태나 이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소득 내용, 원고의 재산상태, 사무실 운영과 대부관련 서류 보관 장소, 소득 은닉 형태나 방법 등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③ [redacted]국세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직전 2012. 1.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할 당시 원고의 대부관련 서류인 의뢰내용각서, 확약서, 각서, 차용금 증서 등 상당한 분량의 탈세제보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세무조사 전에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에 관한 탈세제보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자금 차용인에게 대부약정서에 해당하는 '의뢰내용각서' 등을 1부만 작성하게 하여 이를 자신이 보관하고 상대방에게는 대부관련 서류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부거래를 영위해 왔는데, 위 의뢰내용각서 등에는 대부금액, 대부기간, 차용인, 기타 대부조건 등에 관해서만 기재하도록 하고, 대부자가 누구인지, 약정이자율이나 이자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가족과 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자인 원고 본인의 거래사실이나 사업소득을 철저히 은폐하여 왔으므로, 국세청이 의뢰내용각서 등 대부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거나, 금융추적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거래사실과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원고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가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는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살피건대,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의 판단 대상이 2006년 내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사실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에서 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착수 경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과 마찬가지로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및 중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사업소득과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한 세금 포탈'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2002년 내지 2005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부과 처분으로써 위법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40%의 과소신고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2) 관련법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범 처벌법에서 정한 조세포탈의 방법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각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10명이 넘는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이자나 수수료를 수취,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나 수취 이자를 여러 단계의 계좌이체나 수표 출금 및 입금 등을 통해 자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을 세탁함으로써 그 출처나 성격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며, 관련 장부를 은닉하거나 축소 기재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또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이상, 이 사건 사업소득과 이 사건 이자소득의 일부를 원고의 계좌를 통해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을 별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등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1) 결국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소득(이자수입) 일부를 잘못 산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13 표[44]와 같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

44) 결국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에 한해서만 원고의 소득신고 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별지13 표에서의 해당 과세대상연도인 '2006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45]

2) 또한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인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잘못 산정하여 '2006년 내지 2011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46]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45) 반면 2002년 내지 2005년 귀속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므로, 이 부분 부과 처분은 취소하지 않는다.
46)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2009년 내지 2011년을 과세대상연도로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1

종합소득세 부과 내역

(단위: 원)

순번	귀속연도	부과처분일	세목	부과금액(가산세 포함)
1	2002년	2012. 7. 4.	종합소득세	130,081,620
2	2003년	2012. 7. 4.	종합소득세	424,803,600
3	2004년	2012. 7. 4.	종합소득세	270,119,220
4	2005년	2012. 7. 4.	종합소득세	513,075,270
5	2006년	2012. 7. 4.	종합소득세	359,484,130
6	2007년	2012. 7. 4.	종합소득세	1,936,669,120
7	2008년	2012. 7. 4.	종합소득세	379,369,030
8	2009년	2016. 4. 1.	종합소득세	3,553,994,960
9	2010년	2016. 4. 15.	종합소득세	2,500,556,570
10	2011년	2016. 4. 1.	종합소득세	3,487,363,85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2

지방소득세 부과 내역

(단위: 원)

순번	귀속연도	부과처분일	세목	부과금액
1	2009년	2016. 4. 1.	지방소득세	116,844,370
2	2010년	2016. 4. 15.	지방소득세	90,220,760
3	2011년	2016. 4. 1.	지방소득세	221,734,95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3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원)

과세연도	이 사건 쟁점혼차 관련 부과처분 및 감액경정 내역						이 사건 쟁점혼차 외 부과처분 내역	
	2012. 4. 1.	2012. 7. 4.	2012. 11. 26. (이의신청 감액)	2013. 4. 1. (이의신청 재조사 및 직권 감액)	2016. 4. 6. (심판청구 감액) 2016. 4. 1. (심판청구 증액)	합 계 ⑤	2016. 2. 16.	2016. 4. 15.
2002년		130,081,620				130,081,620		
2003년		424,803,600				424,803,600		
2004년		270,119,220				270,119,220		
2005년		513,075,270				513,075,270		
2006년	748,294,140	844,876,920			-1,233,686,930	359,484,130		
2007년	1,410,287,400	2,519,486,910		-32,241,280	-1,960,863,910	1,936,669,120		
2008년	344,216,710	712,122,920		-117,360,230	-559,610,370	379,369,030		
소계	2,502,798,250	5,414,566,460	0	-149,601,510	-3,754,161,210	4,013,601,990	0	0
2009년	681,380,500	1,777,280,730	-28276060	-44,833,970	1,168,443,760	3,553,994,960		
2010년	952,634,090	735,963,700	-35,098,250	-55,150,590	841,097,680	2,439,446,630		61,109,940
2011년	507,950,470	751,890,100		-3,494,400	2,217,349,530	3,473,695,700	13,668,150	
소 계	2,141,965,060	3,265,134,530	-63,374,310	-103,478,960	4,226,890,970	9,467,137,290	13,668,150	61,109,940
합 계	4,644,763,310	8,679,700,990	-63,374,310	-253,080,470	472,729,760	13,480,739,280	13,668,150	61,109,940
* 납세고지서 등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실제로는 원 이하는 모두 버리고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4

이 사건 사업소득 및 이 사건 이자소득의 신고누락액

(단위: 원)

귀속 년도	이 사건 사업소득					이 사건 이자소득	합계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질권	잔액증명		
2002		199,350,000				92,675,499	292,025,499
2003		605,000,000				167,907,832	772,907,832
2004	45,000,000	306,000,000				217,858,605	568,858,605
2005	163,000,000	556,100,000				311,387,949	1,030,487,949
2006	314,900,000	206,500,000			2,040,000	272,811,817	796,251,817
2007	3,243,900,000	75,700,000			17,950,000	390,294,041	3,727,844,041
2008	538,552,500	43,000,000				291,712,745	873,265,245
2009	6,571,208,480	140,900,000			7,980,000	202,914,563	6,923,003,043
2010	2,140,230,230	771,880,000	2,089,970,000	26,400,000	45,910,000	240,700,692	5,315,010,922
2011	5,652,909,443	2,849,954,220		179,000,000	40,310,000	85,142,930	8,807,316,593
합계	18,669,700,653	5,754,304,220	2,089,970,000	205,400,000	114,190,000	2,273,406,673	29,106,971,546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5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단위 : 원)

순번	차입자	대부일자 (이자수취일)	대부금액	이자 소득 처분금액
1		2004-01-01	500,000,000	45,000,000
2004년 합계				**45,000,000**
2	불상	2005-07-13	3,000,000,000	10,000,000
3	불상	2005-08-09	3,000,000,000	10,000,000
4	불상	2005-08-16	3,000,000,000	16,000,000
5	불상	2005-08-18	3,000,000,000	10,000,000
6	불상	2005-08-22	3,000,000,000	10,000,000
7	불상	2005-08-25	4,000,000,000	12,000,000
8	불상	2005-09-15	3,000,000,000	10,000,000
9	불상	2005-09-28	3,000,000,000	10,000,000
10	불상	2005-10-05	6,000,000,000	10,000,000
11	불상	2005-10-13	3,000,000,000	10,000,000
12	불상	2005-11-01	3,000,000,000	10,000,000
13	불상	2005-11-11	3,000,000,000	10,000,000
14	불상	2005-11-28	9,000,000,000	30,000,000
15		2005-12-28	3,000,000,000	5,000,000
2005년 합계				**163,000,000**
16	불상	2006-01-10	3,000,000,000	16,000,000
17	불상	2006-01-10	3,000,000,000	16,000,000
18	불상	2006-01-26	3,000,000,000	16,000,000
19	불상	2006-01-26	3,000,000,000	16,000,000
20	불상	2006-01-27	3,000,000,000	16,000,000
21	불상	2006-02-15	3,000,000,000	16,000,000
22	불상	2006-03-14	3,000,000,000	16,000,000
23	불상	2006-03-14	3,200,000,000	16,000,000
24	불상	2006-03-15	3,000,000,000	16,000,000
25	불상	2006-03-16	3,000,000,000	16,000,000
26	불상	2006-03-23	3,000,000,000	16,000,000
27	불상	2006-03-26	3,000,000,000	16,000,000
28	불상	2006-04-20	3,000,000,000	16,000,000
29	불상	2006-06-19	3,000,000,000	10,000,000
30	불상	2006-06-25	3,000,000,000	16,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31	불상	2006-06-27	3,000,000,000	15,000,000
32	불상	2006-06-27	3,000,000,000	16,000,000
33	불상	2006-06-29	3,000,000,000	16,000,000
34	불상	2006-08-24	3,000,000,000	16,000,000
35		2006-10-29	3,000,000,000	900,000
36	불상	2006-11-29	3,000,000,000	16,000,000
2006년 합계				314,900,000
37		2007-01-26	3,000,000,000	6,000,000
38		2007-02-01	3,000,000,000	12,000,000
39		2007-02-14	4,000,000,000	16,000,000
40		2007-02-21	3,000,000,000	6,000,000
41		2007-02-21	3,000,000,000	6,000,000
42		2007-02-28	3,000,000,000	10,000,000
43		2007-03-07	3,000,000,000	6,000,000
44		2007-03-20	12,000,000,000	48,000,000
45		2007-03-21	4,200,000,000	12,800,000
46		2007-03-26	8,500,000,000	600,000,000
47		2007-04-10	4,500,000,000	18,000,000
48		2007-04-22	5,000,000,000	28,000,000
49		2007-06-05	20,000,000,000	24,000,000
50		2007-06-21	7,000,000,000	122,500,000
51		2007-06-27	4,500,000,000	36,000,000
52		2007-07-03	2,500,000,000	10,000,000
53		2007-07-19	3,000,000,000	12,000,000
54		2007-07-25	20,000,000,000	40,000,000
55		2007-09-04	10,000,000,000	250,000,000
56		2007-09-12	10,000,000,000	50,000,000
57		2007-09-18	6,000,000,000	7,200,000
58		2007-10-02	6,600,000,000	12,000,000
59		2007-10-11	10,000,000,000	20,000,000
60		2007-10-16	3,000,000,000	7,000,000
61		2007-10-24	5,000,000,000	17,500,000
62		2007-10-30	6,700,000,000	11,900,000
63		2007-11-02	10,000,000,000	30,000,000
64		2007-11-06	10,000,000,000	40,000,000
65		2007-11-15	10,000,000,000	40,000,000
66		2007-12-18	4,000,000,000	100,000,000
67		2007-12-26	10,500,000,000	735,000,000
68		2007-12-27	13,000,000,000	910,000,000
2007년 합계				3,243,900,000
69		2008-01-16	50,000,000,000	60,000,000
70		2008-01-23	10,000,000,000	328,552,5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71		2008-02-01	10,000,000,000	80,000,000
72		2008-02-19	30,000,000,000	12,000,000
73		2008-03-10	3,000,000,000	- 16,000,000
74		2008-03-12	10,000,000,000	20,000,000
75		2008-10-29	27,500,000,000	54,000,000
2008년 합계				538,552,500
76		2009년 초경	4,000,000,000	30,000,000
77		2009-01-01	5,000,000,000	1,400,000
78		2009-01-06	2,500,000,000	164,973,640
79	불상	2009-01-09	7,000,000,000	14,000,000
80		2009-02-09	6,000,000,000	24,000,000
81		2009-02-10	10,000,000,000	200,000,000
82		2009-02-13	1,000,000,000	30,000,000
83	불상	2009-03-16	19,800,000,000	100,000,000
84		2009-03-17	6,000,000,000	240,000,000
85		2009-03-23	14,650,000,000	300,000,000
86		2009-04-08	11,000,000,000	1,100,000,000
87		2009-04-29	20,600,000,000	500,000,000
88		2009-06-30	10,000,000,000	70,000,000
89		2009-07-29	31,500,000,000	80,000,000
90		2009-10-21	4,000,000,000	28,000,000
91		2009-10-27	400,000,000	4,900,000
92		2009-10-28	14,000,000,000	280,000,000
93		2009-10-28	22,000,000,000	45,000,000
94		2009-11-06	5,800,000,000	124,334,840
95	불상	2009-11-18	3,000,000,000	18,000,000
96		2009-11-30	30,000,000,000	2,830,000,000
97	불상	2009-12-15	6,000,000,000	12,000,000
98		2009-12-16	1,700,000,000	5,100,000
99		2009-12-18	600,000,000	1,800,000
100		2009-12-23	700,000,000	2,100,000
101		2009-12-24	900,000,000	2,700,000
102		2009-12-24	600,000,000	1,800,000
103		2009-12-24	900,000,000	2,700,000
104		2009-12-30	8,000,000,000	358,400,000
2009년 합계				6,571,208,480
105		2010-02-02	3,000,000,000	6,000,000
106		2010-02-03	300,000,000	2,100,000
107		2010-02-23	21,400,000,000	930,000,000
108		2010-02-23	10,000,000,000	160,000,000
109	불상	2010-02-25	2,000,000,000	4,000,000
110		2010-03-05	19,000,000,000	2,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11		2010-03-08	19,000,000,000	38,000,000
112		2010-03-16	500,000,000	3,000,000
113		2010-03-16	3,000,000,000	24,000,000
114		2010-06-08	3,000,000,000	139,000
115		2010-06-29	1,000,000,000	500,000
116		2010-06-30	7,000,000,000	100,000,000
117		2010-07-15	20,000,000,000	210,000,000
118		2010-08-24	500,000,000	4,000,000
119		2010-09-02	20,000,000,000	10,000,000
120		2010-10-21	1,300,000,000	26,000,000
121		2010-10-26	1,500,000,000	9,000,000
122		2010-11-10	5,000,000,000	200,000,000
123		2010-11-25	2,400,000,000	60,000,000
124		2010-11-29	500,000,000	500,000
125		2010-12-03	1,000,000,000	200,000
126		2010-12-27	7,000,000,000	31,500,000
127		2010-12-29	3,000,000,000	8,400,000
128		2010-12-30	13,000,000,000	120,000,000
129		2010-12-31	1,000,000,000	17,500,000
130		2010-12-31	800,000,000	24,000,000
131		2010-12-31	600,000,000	500,000
132		2010-12-31	1,200,000,000	20,000,000
133		2010-12-31	700,000,000	17,500,000
134		2010-12-31	1,500,000,000	24,691,230
135		2010-12-31	900,000,000	30,000,000
136		2010-12-31	2,000,000,000	37,800,000
137		2010-12-31	1,000,000,000	18,900,000
2010년 합계				**2,140,230,230**
138		2011-01-04	3,000,000,000	3,000,000
139		2011-01-04	3,000,000,000	6,000,000
140		2011-01-10	2,000,000,000	2,000,000
141		2011-01-14	10,000,000,000	180,000,000
142		2011-01-20	3,000,000,000	2,000,000
143		2011-01-25	3,000,000,000	2,000,000
144		2011-01-25	2,000,000,000	21,000,000
145		2011-01-26	16,000,000,000	8,000,000
146		2011-02-10	4,500,000,000	6,000,000
147		2011-02-17	1,500,000,000	50,000,000
148		2011-02-21	8,000,000,000	4,000,000
149		2011-02-21	8,000,000,000	70,000,000
150		2011-02-22	20,000,000,000	78,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51		2011-02-23	3,000,000,000	18,000,000
152		2011-02-24	5,200,000,000	5,200,000
153		2011-03-03	3,300,000,000	6,600,000
154		2011-03-05	15,000,000,000	7,500,000
155		2011-03-07	20,000,000,000	18,000,000
156		2011-03-08	35,030,050,000	70,000,000
157		2011-03-18	9,200,000,000	100,000,000
158		2011-03-22	3,000,000,000	4,000,000
159		2011-03-24	3,000,000,000	42,000,000
160		2011-03-29	1,000,000,000	600,000
161		2011-03-29	20,000,000,000	10,000,000
162		2011-04-01	35,000,000,000	70,000,000
163		2011-04-19	2,000,000,000	7,300,000
164		2011-04-21	20,000,000,000	20,000,000
165		2011-04-21	35,000,000,000	42,000,000
166		2011-04-25	3,000,000,000	6,000,000
167		2011-04-27	25,000,000,000	50,000,000
168		2011-04-27	5,000,000,000	13,000,000
169		2011-04-27	100,000,000,000	20,000,000
170		2011-05-02	3,000,000,000	37,100,000
171		2011-05-03	1,000,000,000	40,000,000
172		2011-05-04	4,000,000,000	2,000,000
173		2011-05-06	2,000,000,000	7,300,000
174		2011-05-17	10,000,000,000	1,000,000
175		2011-05-18	3,000,000,000	5,000,000
176		2011-05-18	5,000,000,000	25,000,000
177		2011-05-19	18,000,000,000	10,000,000
178		2011-05-24	18,000,000,000	10,000,000
179		2011-05-25	4,000,000,000	4,000,000
180		2011-05-30	10,000,000,000	20,000,000
181		2011-05-31	30,000,000,000	150,000,000
182		2011-05-31	5,000,000,000	17,000,000
183		2011-06-02	15,000,000,000	170,000,000
184		2011-06-07	1,000,000,000	7,000,000
185		2011-06-09	5,000,000,000	7,500,000
186		2011-06-13	3,700,000,000	7,400,000
187		2011-06-16	1,000,000,000	14,700,000
188		2011-06-16	5,000,000,000	15,000,000
189		2011-06-22	2,000,000,000	1,000,000
190		2011-06-27	4,000,000,000	4,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91		2011-06-28	4,750,000,000	9,000,000
192		2011-06-30	10,000,000,000	56,000,000
193		2011-07-04	5,000,000,000	5,000,000
194		2011-07-04	4,000,000,000	8,000,000
195		2011-07-07	5,500,000,000	10,000,000
196		2011-07-08	2,500,000,000	1,000,000
197		2011-07-08	2,900,000,000	26,000,000
198		2011-07-12	3,000,000,000	3,000,000
199		2011-07-19	8,500,000,000	1,000,000
200		2011-07-20	3,000,000,000	1,500,000
201		2011-07-21	950,000,000	1,750,000
202		2011-07-21	20,000,000,000	20,000,000
203		2011-07-21	2,300,000,000	2,300,000
204		2011-07-26	5,000,000,000	5,000,000
205		2011-07-26	3,000,000,000	36,792,830
206		2011-08-02	3,000,000,000	70,000,000
207		2011-08-09	3,500,000,000	3,500,000
208		2011-08-17	12,000,000,000	36,000,000
209		2011-08-17	5,000,000,000	10,000,000
210		2011-08-23	4,000,000,000	7,000,000
211		2011-08-31	21,000,000,000	10,500,000
212		2011-08-31	5,000,000,000	30,000,000
213		2011-09-02	4,000,000,000	179,401,613
214		2011-09-05	5,000,000,000	40,000,000
215		2011-09-06	5,000,000,000	2,500,000
216		2011-09-07	3,000,000,000	17,500,000
217		2011-09-08	4,000,000,000	10,000,000
218		2011-09-09	5,500,000,000	13,750,000
219		2011-09-16	3,000,000,000	1,000,000
220		2011-09-19	30,000,000,000	15,000,000
221		2011-09-19	10,000,000,000	30,000,000
222		2011-09-26	3,000,000,000	1,500,000
223		2011-09-27	1,000,000,000	900,000
224		2011-09-27	7,000,000,000	14,000,000
225		2011-09-28	10,000,000,000	17,500,000
226		2011-10-05	5,000,000,000	2,500,000
227		2011-10-07	2,000,000,000	39,200,000
228		2011-10-17	1,500,000,000	1,000,000
229		2011-10-17	3,000,000,000	4,500,000
230		2011-10-18	10,000,000,000	80,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31		2011-10-21	50,000,000,000	30,000,000
232		2011-10-21	2,300,000,000	5,000,000
233		2011-10-24	6,500,000,000	5,000,000
234		2011-10-25	10,000,000,000	20,000,000
235		2011-10-26	1,000,000,000	6,000,000
236		2011-10-27	35,000,000,000	35,000,000
237		2011-10-31	2,000,000,000	1,000,000
238		2011-10-31	30,000,000,000	30,000,000
239		2011-11-24	3,000,000,000	12,000,000
240		2011-11-24	10,000,000,000	5,000,000
241		2011-11-28	5,000,000,000	5,000,000
242		2011-11-30	8,640,000,000	430,000,000
243		2011-12-02	25,000,000,000	196,000,000
244		2011-12-05	3,500,000,000	3,500,000
245		2011-12-06	5,000,000,000	5,000,000
246		2011-12-08	800,000,000	3,360,000
247		2011-12-09	10,000,000,000	15,000,000
248		2011-12-09	1,000,000,000	6,000,000
249		2011-12-09	2,000,000,000	52,000,000
250		2011-12-10	600,000,000	16,800,000
251		2011-12-12	10,000,000,000	60,000,000
252		2011-12-13	5,000,000,000	5,000,000
253		2011-12-13	1,500,000,000	1,500,000
254		2011-12-14	1,800,000,000	3,600,000
255		2011-12-15	5,000,000,000	5,000,000
256		2011-12-15	10,000,000,000	50,000,000
257		2011-12-15	15,000,000,000	1,350,000,000
258		2011-12-16	600,000,000	24,000,000
259		2011-12-21	5,800,000,000	5,800,000
260		2011-12-22	5,000,000,000	30,000,000
261		2011-12-22	3,000,000,000	2,000,000
262		2011-12-23	500,000,000	31,500,000
263		2011-12-26	10,000,000,000	10,000,000
264		2011-12-26	800,000,000	7,000,000
265		2011-12-26	500,000,000	12,500,000
266		2011-12-27	3,000,000,000	1,000,000
267		2011-12-27	3,000,000,000	10,000,000
268		2011-12-27	1,000,000,000	25,000,000
269		2011-12-27	6,000,000,000	214,200,000
270		2011-12-28	700,000,000	24,5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71		2011-12-28	10,000,000,000	300,000,000
272		2011-12-28	3,000,000,000	6,000,000
273		2011-12-30	2,300,000,000	16,100,000
274		2011-12-30	600,000,000	2,100,000
275		2011-12-30	3,300,000,000	19,800,000
276		2011-12-30	1,000,000,000	18,200,000
277		2011-12-30	1,000,000,000	7,000,000
278		2011-12-30	450,000,000	12,915,000
279		2011-12-30	500,000,000	10,500,000
280		2011-12-30	1,400,000,000	42,140,000
281		2011-12-30	300,000,000	10,200,000
282		2011-12-30	1,000,000,000	35,000,000
283		2011-12-30	500,000,000	10,000,000
284		2011-12-30	800,000,000	16,000,000
285		2011-12-30	1,500,000,000	23,100,000
286		2011-12-30	500,000,000	1,400,000
287		2011-12-30	500,000,000	1,400,000
288		2011-12-31	2,000,000,000	46,000,000
2011년 합계				5,652,909,443
총 합계액				**18,669,700,653**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6

이 사건 제2유형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단위: 원)

순번	예금주	거래일자	거래내용 (입금액 원인)	이자
1		2002-04-29		5,000,000
2		2002-05-03		20,000,000
3		2002-05-28		7,000,000
4		2002-06-04		6,000,000
5		2002-07-04		5,000,000
6		2002-07-10		6,000,000
7		2002-07-11		5,000,000
8		2002-10-07		30,000,000
9		2002-10-23		40,350,000
10		2002-11-13		10,000,000
11		2002-11-13		10,000,000
12		2002-11-13		10,000,000
13		2002-11-13		5,000,000
14		2002-11-18		5,000,000
15		2002-11-19		20,000,000
16		2002-11-28		15,000,000
2002년 합계				**199,350,000**
17		2003-02-27		26,000,000
18		2003-03-13		30,500,000
19		2003-04-04		18,000,000
20		2003-04-08		25,000,000
21		2003-04-11		25,000,000
22		2003-04-11		20,000,000
23		2003-04-25		10,000,000
24		2003-04-29		25,000,000
25		2003-05-30		5,000,000
26		2003-06-23		30,000,000
27		2003-06-30		24,000,000
28		2003-07-01		20,000,000
29		2003-07-01		11,000,000
30		2003-07-10		23,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31		2003-07-10		27,000,000
32		2003-07-23		30,000,000
33		2003-08-05		5,000,000
34		2003-08-05		5,000,000
35		2003-08-25		30,000,000
36		2003-10-02		30,000,000
37		2003-10-14		7,500,000
38		2003-10-16		30,000,000
39		2003-10-16		18,000,000
40		2003-10-29		30,000,000
41		2003-10-31		7,500,000
42		2003-11-28		10,000,000
43		2003-11-28		30,000,000
44		2003-12-26		22,500,000
45		2003-12-30		30,000,000
2003년 합계				**605,000,000**
46		2004-01-20		10,000,000
47		2004-02-07		10,000,000
48		2004-02-07		10,000,000
49		2004-02-07		8,000,000
50		2004-02-09		30,000,000
51		2004-02-19		5,000,000
52		2004-02-26		30,000,000
53		2004-04-02		30,000,000
54		2004-04-07		14,000,000
55		2004-04-30		30,000,000
56		2004-05-10		10,000,000
57		2004-05-31		30,000,000
58		2004-08-31		30,000,000
59		2004-09-09		14,000,000
60		2004-09-23		10,000,000
61		2004-12-10		30,000,000
62		2004-12-20		5,000,000
2004년 합계				**306,000,000**
63		2005-01-05		30,000,000
64		2005-01-10		15,000,000
65		2005-01-10		6,800,000
66		2005-01-25		5,000,000
67		2005-02-03		30,000,000
68		2005-02-22		5,100,000
69		2005-02-25		15,000,000
70		2005-03-03		13,8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71		2005-06-05		5,000,000
72		2005-06-07		26,000,000
73		2005-06-07		21,000,000
74		2005-06-20		23,000,000
75		2005-07-26		20,000,000
76		2005-07-26		14,000,000
77		2005-08-09		20,000,000
78		2005-08-11		30,000,000
79		2005-08-16		14,000,000
80		2005-08-25		28,000,000
81		2005-09-15		10,000,000
82		2005-09-15		5,000,000
83		2005-09-16		20,000,000
84		2005-09-28		6,000,000
85		2005-10-14		15,000,000
86		2005-11-01		2,000,000
87		2005-11-16		15,000,000
88		2005-11-22		15,000,000
89		2005-11-23		12,000,000
90		2005-11-30		5,000,000
91		2005-12-02		8,000,000
92		2005-12-05		13,000,000
93		2005-12-06		16,000,000
94		2005-12-07		21,000,000
95		2005-12-19		30,000,000
96		2005-12-28		19,000,000
97		2005-12-28		8,000,000
98		2005-12-30		14,400,000
2005년 합계				**556,100,000**
99		2006-03-07		10,000,000
100		2006-04-04		15,000,000
101		2006-06-15		7,000,000
102		2006-09-06		15,000,000
103		2006-09-12		9,000,000
104		2006-10-04		6,000,000
105		2006-10-10		16,000,000
106		2006-10-18		37,000,000
107		2006-10-18		13,000,000
108		2006-10-26		15,000,000
109		2006-11-02		15,000,000
110		2006-11-03		10,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11		2006-11-04		9,000,000
112		2006-11-16		15,000,000
113		2006-12-29		14,500,000
2006년 합계				**206,500,000**
114		2007-01-31		14,400,000
115		2007-02-16		8,000,000
116		2007-02-20		15,000,000
117		2007-02-28		4,300,000
118		2007-04-04		7,000,000
119		2007-05-15		17,000,000
120		2007-11-01		10,000,000
2007년 합계				**75,700,000**
121		2008-04-01		18,000,000
122		2008-04-11		10,000,000
123		2008-04-24		10,000,000
124		2008-12-17		5,000,000
2008년 합계				**43,000,000**
125		2009-01-06		16,000,000
126		2009-02-17		22,000,000
127		2009-03-09		6,000,000
128		2009-04-21		8,000,000
129		2009-07-24		5,000,000
130		2009-10-05		12,000,000
131		2009-11-12		5,000,000
132		2009-11-25		9,000,000
133		2009-12-08		6,000,000
134		2009-12-23		5,900,000
135		2009-12-30		10,000,000
136		2009-12-30		36,000,000
2009년 합계				**140,900,000**
137		2010-01-06		10,000,000
138		2010-01-06		10,000,000
139		2010-01-06		30,000,000
140		2010-02-03		7,900,000
141		2010-02-09		10,000,000
142		2010-03-05		4,600,000
143		2010-03-29		1,000,000
144		2010-04-28		20,000,000
145		2010-05-11		20,000,000
146		2010-05-11		30,000,000
147		2010-05-13		12,000,000
148		2010-05-14		12,000,000
149		2010-05-19		6,000,000
150		2010-05-19		13,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51		2010-05-20		12,000,000
152		2010-05-26		50,000,000
153		2010-07-07		30,000,000
154		2010-07-07		40,000,000
155		2010-07-08		30,000,000
156		2010-07-09		40,000,000
157		2010-07-12		42,000,000
158		2010-07-14		50,000,000
159		2010-07-15		10,000,000
160		2010-07-20		50,000,000
161		2010-07-22		11,200,000
162		2010-07-22		12,400,000
163		2010-07-22		20,000,000
164		2010-07-26		10,000,000
165		2010-08-13		47,000,000
166		2010-08-16		10,000,000
167		2010-08-17		10,000,000
168		2010-08-24		1,000,000
169		2010-09-10		30,000,000
170		2010-09-10		50,000,000
171		2010-09-13		2,200,000
172		2010-12-01		17,500,000
173		2010-12-20		10,000,000
2010년 합계				**771,800,000**
174		2011-01-03		52,000,000
175		2011-01-05		5,000,000
176		2011-01-05		5,000,000
177		2011-01-05		64,000,000
178		2011-01-05		14,000,000
179		2011-01-05		40,000,000
180		2011-01-10		34,000,000
181		2011-01-20		18,000,000
182		2011-01-20		50,000,000
183		2011-01-25		8,000,000
184		2011-01-25		35,000,000
185		2011-01-28		10,000,000
186		2011-01-28		30,000,000
187		2011-01-28		5,000,000
188		2011-02-14		26,000,000
189		2011-02-14		90,000,000
190		2011-02-17		10,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91		2011-02-21		36,000,000
192		2011-02-23		2,000,000
193		2011-02-24		20,600,000
194		2011-03-03		3,400,000
195		2011-03-03		10,000,000
196		2011-03-07		4,480,000
197		2011-03-07		6,000,000
198		2011-03-07		6,000,000
199		2011-03-07		6,000,000
200		2011-03-07		10,000,000
201		2011-03-09		10,000,000
202		2011-03-09		5,000,000
203		2011-03-09		10,000,000
204		2011-03-10		5,000,000
205		2011-03-11		13,000,000
206		2011-03-14		40,000,000
207		2011-03-16		10,000,000
208		2011-03-16		85,000,000
209		2011-03-17		5,000,000
210		2011-03-17		5,000,000
211		2011-03-17		10,000,000
212		2011-03-17		5,000,000
213		2011-03-18		15,000,000
214		2011-03-23		50,000,000
215		2011-03-24		16,050,000
216		2011-03-30		10,000,000
217		2011-03-30		10,000,000
218		2011-03-31		50,000,000
219		2011-04-01		39,500,000
220		2011-04-01		6,000,000
221		2011-04-01		6,000,000
222		2011-04-01		6,000,000
223		2011-04-01		6,000,000
224		2011-04-01		6,000,000
225		2011-04-04		15,000,000
226		2011-04-05		20,000,000
227		2011-04-07		5,000,000
228		2011-04-07		6,000,000
229		2011-04-11		5,900,000
230		2011-04-11		6,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31		2011-04-18		6,000,000
232		2011-04-18		10,000,000
233		2011-04-21		5,000,000
234		2011-04-21		18,250,000
235		2011-04-25		5,000,000
236		2011-04-25		24,000,000
237		2011-05-02		26,000,000
238		2011-05-04		18,000,000
239		2011-05-06		7,000,000
240		2011-05-12		5,000,000
241		2011-05-13		10,000,000
242		2011-05-13		5,000,000
243		2011-05-19		10,000,000
244		2011-05-19		20,000,000
245		2011-05-20		40,000,000
246		2011-05-23		50,000,000
247		2011-05-23		20,000,000
248		2011-05-23		40,000,000
249		2011-05-24		70,000,000
250		2011-05-25		1,000,000
251		2011-05-27		5,000,000
252		2011-05-31		10,000,000
253		2011-06-01		39,002,900
254		2011-06-03		10,000,000
255		2011-06-03		10,000,000
256		2011-06-09		5,000,000
257		2011-06-14		10,000,000
258		2011-06-14		10,000,000
259		2011-06-15		10,000,000
260		2011-06-16		38,300,000
261		2011-06-17		47,000,000
262		2011-06-18		5,000,000
263		2011-06-20		20,000,000
264		2011-06-24		25,000,000
265		2011-06-24		53,600,000
266		2011-06-28		5,000,000
267		2011-06-29		18,650,000
268		2011-07-04		1,000,000
269		2011-07-04		6,000,000
270		2011-07-04		6,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71		2011-07-04		6,000,000
272		2011-07-04		10,000,000
273		2011-07-05		6,000,000
274		2011-07-05		7,000,000
275		2011-07-08		4,100,000
276		2011-07-08		6,700,000
277		2011-07-13		10,000,000
278		2011-07-19		19,000,000
279		2011-07-20		38,500,000
280		2011-07-21		6,050,000
281		2011-07-27		5,000,000
282		2011-07-27		10,000,000
283		2011-07-27		10,000,000
284		2011-07-27		13,600,000
285		2011-08-12		10,000,000
286		2011-08-12		20,000,000
287		2011-08-12		60,000,000
288		2011-08-12		10,000,000
289		2011-08-17		2,500,000
290		2011-08-17		20,000,000
291		2011-08-24		15,000,000
292		2011-09-05		40,000,000
293		2011-09-05		15,000,000
294		2011-09-08		25,000,000
295		2011-09-09		10,000,000
296		2011-09-14		10,000,000
297		2011-09-16		4,000,000
298		2011-09-20		5,000,000
299		2011-09-22		10,000,000
300		2011-09-22		7,218,320
301		2011-09-22		93,187,000
302		2011-09-26		8,500,000
303		2011-09-27		19,100,000
304		2011-09-27		10,000,000
305		2011-10-05		20,086,000
306		2011-10-07		20,000,000
307		2011-10-10		3,500,000
308		2011-10-11		6,000,000
309		2011-10-17		4,100,000
310		2011-10-17		16,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311		2011-10-18		20,000,000
312		2011-10-19		16,000,000
313		2011-10-21		30,000,000
314		2011-10-21		5,000,000
315		2011-10-24		5,000,000
316		2011-10-28		41,980,000
317		2011-10-31		19,000,000
318		2011-10-31		20,000,000
319		2011-10-31		20,000,000
320		2011-11-08		15,000,000
321		2011-11-09		10,000,000
322		2011-12-06		15,000,000
323		2011-12-14		16,400,000
324		2011-12-15		25,000,000
325		2011-12-19		29,000,000
326		2011-12-21		12,300,000
327		2011-12-21		10,000,000
328		2011-12-28		31,500,000
329		2011-12-29		30,000,000
330		2011-12-29		30,000,000
331		2011-12-29		20,000,000
332		2011-12-29		5,900,000
2011년 합계				2,849,954,220
합계				5,754,304,22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7

이 사건 제3유형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단위 : 원)

순번	일자	대여처	대여원금	이자금액
1	2010-01-14		2,800,000,000	5,600,000
2	2010-01-19		3,000,000,000	6,000,000
3	2010-01-19		10,800,000,000	65,000,000
4	2010-02-02		3,000,000,000	24,300,000
5	2010-02-02		3,000,000,000	30,000,000
6	2010-02-03		1,000,000,000	9,000,000
7	2010-02-04		750,000,000	1,800,000
8	2010-02-04		1,400,000,000	3,220,000
9	2010-02-05		700,000,000	3,000,000
10	2010-02-17		600,000,000	1,800,000
11	2010-02-22		10,000,000,000	70,000,000
12	2010-02-23		3,000,000,000	18,000,000
13	2010-03-03		3,000,000,000	24,000,000
14	2010-03-09		3,000,000,000	4,500,000
15	2010-03-17		999,000,000	30,000,000
16	2010-03-24		2,800,000,000	6,000,000
17	2010-03-29		7,000,000,000	14,000,000
18	2010-04-05		20,000,000,000	73,000,000
19	2010-04-06		2,800,000,000	5,000,000
20	2010-04-19		5,000,000,000	10,000,000
21	2010-04-22		18,000,000,000	40,000,000
22	2010-04-27		10,000,000,000	15,000,000
23	2010-05-03		3,000,000,000	5,000,000
24	2010-05-06		9,000,000,000	36,000,000
25	2010-05-07		500,000,000	10,000,000
26	2010-05-07		5,000,000,000	10,000,000
27	2010-05-12		400,000,000	16,000,000
28	2010-05-12		3,000,000,000	20,000,000
29	2010-05-13		9,000,000,000	18,000,000
30	2010-05-13		21,000,000,000	160,000,000
31	2010-05-17		30,000,000,000	50,000,000
32	2010-05-19		1,000,000,000	7,000,000
33	2010-05-20		21,000,000,000	80,000,000
34	2010-05-20		18,500,000,000	100,000,000
35	2010-05-26		17,000,000,000	100,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36	2010-06-06		2,500,000,000	10,000,000
37	2010-06-09		2,000,000,000	3,600,000
38	2010-06-11		6,500,000,000	13,000,000
39	2010-06-15		4,300,000,000	29,000,000
40	2010-06-15		25,000,000,000	60,000,000
41	2010-06-24		5,000,000,000	70,000,000
42	2010-06-25		5,800,000,000	55,000,000
43	2010-06-29		500,000,000	5,000,000
44	2010-07-05		15,000,000,000	10,000,000
45	2010-07-05		9,600,000,000	62,000,000
46	2010-07-06		3,500,000,000	4,950,000
47	2010-07-12		30,000,000,000	58,000,000
48	2010-07-22		29,600,000,000	60,000,000
49	2010-07-26		25,000,000,000	40,000,000
50	2010-08-10		10,000,000,000	20,000,000
51	2010-08-20		450,000,000	9,000,000
52	2010-08-24		500,000,000	15,000,000
53	2010-08-25		1,000,000,000	5,000,000
54	2010-08-25		3,000,000,000	11,000,000
55	2010-08-25			100,000,000
56	2010-08-31		1,000,000,000	1,000,000
57	2010-09-16		300,000,000	500,000
58	2010-09-17		2,000,000,000	20,000,000
59	2010-09-30		6,000,000,000	7,000,000
60	2010-10-18		3,000,000,000	8,000,000
61	2010-10-20		1,000,000,000	3,200,000
62	2010-10-21		9,500,000,000	12,000,000
63	2010-10-28		42,000,000,000	70,000,000
64	2010-10-29		3,000,000,000	4,500,000
65	2010-11-01		8,000,000,000	20,000,000
66	2010-11-03		1,000,000,000	30,000,000
67	2010-11-04		8,000,000,000	15,000,000
68	2010-11-04		2,000,000,000	100,000,000
69	2010-11-10		2,500,000,000	25,000,000
70	2010-11-15		10,000,000,000	20,000,000
71	2010-11-25			40,000,000
72	2010-11-29		1,600,000,000	2,000,000
				2,089,97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8

이 사건 제4유형 사업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질권 수입금액 누락액(1)

(단위 : 원)

순번	일자	내부내용	대여원금	이자금액
1	2006-12-15		4,088,743,531	2,040,000
2006년 합계				2,040,000
2	2007-06-04		1,725,778,574	860,000
3	2007-06-04		3,004,347,526	1,500,000
4	2007-06-05		3,195,778,574	1,590,000
5	2007-06-05		6,004,820,386	3,000,000
6	2007-07-26		5,002,157,335	2,500,000
7	2007-07-26		5,003,114,560	2,500,000
8	2007-12-04		10,006,140,004	5,000,000
9	2007-12-18		2,000,486,796	1,000,000
2007년 합계				17,950,000
10	2009-03-18		500,060,272	250,000
11	2009-08-28		3,200,000,000	1,600,000
12	2009-12-04		4,278,525,061	2,130,000
13	2009-12-04		8,005,010,000	4,000,000
2009년 합계				7,98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4	2010-02-11		3,000,000,000	1,500,000
15	2010-04-02		17,301,892,553	8,650,000
16	2010-04-21		5,087,765,000	2,540,000
17	2010-05-26		17,000,245,808	8,500,000
18	2010-08-31		13,010,000,000	6,500,000
19	2010-10-27		2,000,626,020	1,000,000
20	2010-11-02		2,020,000,010	1,010,000
21	2010-11-03		8,690,023,187	4,340,000
22	2010-12-01		3,000,163,832	1,500,000
23	2010-12-22		7,235,252,159	3,610,000
24	2010-12-28		13,520,311,319	6,760,000
2010년 합계				**45,910,000**
25	2011-03-02		13,051,491,185	6,520,000
26	2011-03-07		3,051,491,185	1,520,000
27	2011-03-22		1,000,311,467	500,000
28	2011-04-20		3,500,000,000	1,750,000
29	2011-05-12		29,162,649,041	14,580,000
30	2011-08-04		20,091,779,274	10,04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31	2011-10-10		3,000,448,702	1,500,000
32	2011-11-17		4,503,253,708	2,250,000
33	2011-11-25		300,578,100	150,000
34	2011-12-21		3,004,208,619	1,500,000
2011년 합계				40,310,000
총 합계액				114,190,000

잔액증명 수입금액 누락액

(단위: 원)

순번	일자	내부내용	대여처	대여원금	이자금액
1	2010-12-31			1,100,000,000	26,400,000
2010년 합계					26,400,000
2	2011-01-10			3,000,000,000	3,000,000
3	2011-01-10			3,000,000,000	3,000,000
4	2011-03-09			3,000,000,000	3,000,000
5	2011-04-07			6,000,000,000	6,000,000
6	2011-05-09			6,000,000,000	144,000,000
7	2011-07-12			20,000,000,000	20,000,000
2011년 합계					179,000,000
총 합계액					205,4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9

이 사건 이자소득 신고누락액의 구체적 내역

1. 2002년 내지 2005년

(단위: 원)

성명(예금주)	지급년도			
	2002	2003	2004	2005
AM	7,714,077	32,738,639	39,313,496	38,895,702
BQ	2,320,522	45,299,833	37,431,308	38,710,516
BP	10,253,799	8,061,052	13,927,550	89,392,764
BW	144,404	187,914	64,896	866,255
BT	52,652,614	34,799,198	45,185,907	40,256,963
BX	592,031	703,787	305,808	258,042
CA				99,315
BU		5,852,055	39,928,850	47,002,685
원고(A)	18,958,606	39,938,330	39,190,081	52,861,030
D	39,446	325,295	711,566	706,261
BV		1,729	1,799,143	2,338,416
누락 소득금액 합계	92,675,499	167,907,832	217,858,605	311,387,949

2. 2006년 내지 2010년

(단위: 원)

성명(예금주)	지급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AM	78,152,986	86,563,276	3,859,368		51,100,474
BQ	27,215,508	4,183,937	17,443,212		4,191,899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BP	73,520,488	88,549,547	40,185,698	28,597,374	
BS		46,038,465	5,870,442		
BD	203,229	221,902	58,478,647	36,909,390	91,135,908
CB			12,340,222	4,012,052	
BT	29,702,944	38,011,674	541,783	39,733	552,473
BX	6,792,222	914,060	9,553	9,455,715	5,202,440
AC	2,417	1,469	1,230	9,452,967	7,184,770
CA	524,553	1,052,205	35,246	193,497	8,740
BR	1,153,061	72,325,242	34,988,894	27,720,604	22,348,585
BZ	42,079	18,572	55,812,102	28,325,340	4,501,718
BU	27,570,962	34,938,889	36,356,314	56,882,381	53,088,134
원고(A)			24,200,995	116,414	1,157,376
C					98,629,388
D	24,530,777	16,376,177	398,975	725	2,140
BV	3,400,591	1,098,626	1,190,064	1,208,371	226,034
누락 소득금액 합계	272,811,817	390,294,041	291,712,745	202,914,563	240,700,691

3. 2011년

(단위: 원)

성명(예금주)	소득금액
AM	27,255,996
BQ	22,797
BP	6,213,602
BD	18,457,269
BX	19,788
AC	163,993
BZ	215,435
BU	17,100,175
원고(A)	14,215,830
BV	1,478,045
누락 소득금액 합계	85,142,93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 10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포탈)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 19. 기획재정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이하의 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11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내역

(단위: 원)

순번	별지5에서의 순번	차용인	과세연도	이자수취일	대부금액	기소된 사업소득금액(이자수입액)	인정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47]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상의 사업소득금액
1	별지537	AV	2007	2007. 1. 26.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2	별지538	AV	2007	2007. 2. 1.	3,000,000,000	12,000,000	전액	12,000,000
3	별지539	AV	2007	2007. 2. 14.	4,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4	별지572	AV	2008	2007. 2. 18.	3,000,000,000	12,000,000	전액	12,000,000
5	별지540	AV	2007	2007. 2. 21.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6	별지541	AV	2007	2007. 2. 21.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7	별지543	AV	2007	2007. 3. 7.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8	별지5	AV	2007	2007.	4,200,000,000	19,000,000	전액	12,800,000[4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45			3. 21.				
9	별지551	CF	2007	2007. 6. 27.	4,500,000,000	36,000,000	전액	36,000,000
10	별지553	AV	2007	2007. 7. 19.	3,000,000,000	12,000,000	전액	12,000,000
11	별지554	CG㈜	2007	2007. 7. 25.	20,000,000,000	40,000,000	전액	40,000,000
12	별지567	CH 주식회사	2007	2007. 12. 26.	10,500,000,000	735,000,000	전액	735,000,000
13	별지574	㈜CI CJ, CK	2008	2008. 3. 12.	10,000,000,000	20,000,000	전액	20,000,000
14	별지580	CL	2009	2009. 2. 9.	6,000,000,000	24,000,000	전액	24,000,000
15	별지552	CM	2007	2007. 7. 3.	2,500,000,000	10,000,000	전액	10,000,000
16	별지575	CN	2008	2008. 10. 29.	27,500,000,000	54,000,000	전액	54,000,000
17	별지563	CO	2007	2007. 11 2.	10,000,000,000	30,000,000	전액	30,000,000
18	별지5	CP	2007	2007.	10,000,000,000	40,000,000	전액	40,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64			11. 6.				
19	별지5 65	CP	2007	2007. 11. 15.	10,000,000,000	40,000,000	전액	40,000,000
20	별지5 66	CQ㈜ CR	2007	2007. 12. 18.	4,000,000,000	100,000,000	전액	100,000,000
21	별지5 68	㈜CS	2007	2007. 12. 27.	13,000,000,000	910,000,000	전액	910,000,000
22	별지5 76	CT	2009	2008. 12. 31.	4,000,000,000	240,000,000	전액	30,000,000[49]
23	별지5 86	CU	2009	2009. 4. 8.	11,200,000,000	1,120,000,000	전액	1,100,000,000 [50]
24	별지5 105	CV	2010	2010. 2. 2.	3,000,000,000	6,000,000	전액	6,000,000
25	별지5 121	CW㈜ CX	2010	2010. 10. 26.	1,500,000,000	9,000,000	전액	9,000,000

47)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금액을 의미한다.
48)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는 달리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걸쳐 감액되었다(2018. 3. 7.자 피고 [redacted]세무서장 준비서면 참고).
49)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과는 달리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걸쳐 감액되었다(2018. 3. 7.자 피고 [redacted]세무서장 준비서면 참고).
50)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기소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당시부터 1,100,000,000원만을 부과 처분 대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다(2018. 3. 7.자 피고 [redacted]세무서장 준비서면 참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12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추가로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대상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내역

(단위: 원)

순번	별지 5에서의 순번	차용인	과세연도	이자 수취일	대부금액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업소득 금액(이자수입액)	인정되지 않은 사업소득 금액5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상의 사업소득 금액
1	별지5 16	성명불상	2006	2006. 1. 10.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2	별지5 17	성명불상	2006	2006. 1. 10.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3	별지5 18	성명불상	2006	2006. 1. 26.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4	별지5 19	성명불상	2006	2006. 1. 26.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5	별지5 20	성명불상	2006	2006. 1. 27.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6	별지521	성명불상	2006	2006. 2. 15.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7	별지522	성명불상	2006	2006. 3. 14.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8	별지523	성명불상	2006	2006. 3. 14.	3,2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9	별지524	성명불상	2006	2006. 3. 15.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0	별지525	성명불상	2006	2006. 3. 16.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1	별지526	성명불상	2006	2006. 3. 23.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2	별지527	성명불상	2006	2006. 3. 26.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3	별지528	성명불상	2006	2006. 4. 20.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4	별지529	성명불상	2006	2006. 6. 19.	3,000,000,000	10,000,000	전액	10,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5	별지530	성명불상	2006	2006. 6. 25.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6	별지531	성명불상	2006	2006. 6. 27.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7	별지532	성명불상	2006	2006. 6. 27.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8	별지533	성명불상	2006	2006. 6. 29.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19	별지534	성명불상	2006	2006. 8. 24.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20	별지536	성명불상	2006	2006. 11. 29.	3,000,000,000	16,000,000	전액	16,000,000
21	별지547	BO	2007	2007. 4. 10.	4,500,000,000	18,000,000	전액	18,000,000
22	별지548	R	2007	2007. 4. 22.	5,000,000,000	28,000,000	전액	28,000,000
23	별지550	S	2007	2007. 6. 21.	7,000,000,000	122,500,000	전액	122,500,000
24	별지556	T	2007	2007. 9. 12.	10,000,000,000	50,000,000	10,000,000	50,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5	별지5 58	V	2007	2007. 10. 2.	6,600,000,000	30,000,000	10,000,000	12,000,000[52]
26	별지5 84	㈜CY	2009	2009. 3. 17.	6,000,000,000	240,000,000	200,000,000	240,000,000
27	별지5 107	CZ부동산투자회사	2010	2010. 2. 23.	5,500,000,000	1,260,000,000	380,000,000	930,000,000[53]

51) 이 사건 관련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 금액을 의미한다.
52)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당시부터 12,000,000원만을 부과 처분 대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다(을가 제7호증 14면 참고).
53) 이 사건 관련 1심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기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당시부터 930,000,000원만을 부과 처분 대상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다(2018. 3. 7.자 피고 [redacted]세무서장 준비서면 참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별지1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잘못 산정한 원고의 소득신고[54] 누락액 내역

순번	별지 5에서의 순번	과세연도	취소대상 소득금액 (이자수입)
1	별지5 16	2006	전액
2	별지5 17	2006	전액
3	별지5 18	2006	전액
4	별지5 19	2006	전액
5	별지5 20	2006	전액
6	별지5 21	2006	전액
7	별지5 22	2006	전액
8	별지5 23	2006	전액
9	별지5 24	2006	전액
10	별지5 25	2006	전액
11	별지5 26	2006	전액
12	별지5 27	2006	전액

54) 결국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유형 사업소득에 한해서만 원고의 소득신고 누락액을 잘못 산정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13	별지5 28	2006	전액
14	별지5 29	2006	전액
15	별지5 30	2006	전액
16	별지5 31	2006	전액
17	별지5 32	2006	전액
18	별지5 33	2006	전액
19	별지5 34	2006	전액
20	별지5 36	2006	전액
21	별지5 37	2007	전액
22	별지5 38	2007	전액
23	별지5 39	2007	전액
24	별지5 40	2007	전액
25	별지5 41	2007	전액
26	별지5 43	2007	전액
27	별지5 45	2007	전액
28	별지5 47	2007	전액
29	별지5	2007	전액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48		
30	별지5 50	2007	전액
31	별지5 51	2007	전액
32	별지5 52	2007	전액
33	별지5 53	2007	전액
34	별지5 54	2007	전액
35	별지5 56	2007	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36	별지5 58	2007	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37	별지5 63	2007	전액
38	별지5 64	2007	전액
39	별지5 65	2007	전액
40	별지5 66	2007	전액
41	별지5 67	2007	전액
42	별지5 68	2007	전액
43	별지5 72	2008	전액
44	별지5 74	2008	전액
45	별지5 75	2008	전액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46	별지5 76	2009	전액
47	별지5 80	2009	전액
48	별지5 84	2009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49	별지5 86	2009	전액
50	별지5 105	2010	전액
51	별지5 107	2010	3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52	별지5 121	2010	전액
53	별지5 151	2011	전액
54	별지5 159	2011	전액
55	별지5 162	2011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56	별지5 169	2011	전액
57	별지5 171	2011	300만 원
58	별지5 183	2011	천만 원
59	별지5 211	2011	1,00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60	별지5 216	2011	전액
61	별지5 230	2011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62	별지5	2011	600만 원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8-19

	251		초과하는 부분